

2020
국민 노동인권익식 실태조사

2021년 1월

- 목 차 -

Chapter 1: 조사개요	2
1. 배경 및 목적	3
2. 조사설계	5
3. 조사내용	6
4. 응답자 구성	8
Chapter 2: 조사결과 요약	10
Chapter 3: 세부 분석결과	17
1. 개별법적 권리영역	18
2. 집단법적 권리영역	60
3. 사회·인격적 권리영역	81
Chapter 4: 결과 및 제언	101

2020년 국민 노동인권익식조사

CHAPTER 1

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의 진보가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노동의 미래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상황에서 기술과 노동이 상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문제와 더불어 고용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에서는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노총(ICTU)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 노동권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동권이 보다 자유롭게 보장되는 1, 2등급은 고사하고, 노동권 무보장 및 법치붕괴의 +5등급을 겨우 벗어나 노동권이 무보장되는 5등급에 브라질, 에리트리아 등 35개국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국내의 노동권리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글로벌 기준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는 노동인권이 절실한 취약 노동자일수록 더욱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조대엽 등, 2018¹⁾). 예를 들어, 취약 노동자(예: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들은 고용불안, 낮은 처우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및 정책, 제도 등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노동 권리에 대한 자주적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이며, 최근 들어서 지자체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예: 경기도내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등)과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예: 경상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가 실시되고 있다.

노동인권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의 노동자 권리와 더불어 노동할 권리, 노동관련 사회보장 및 노동을 통한 인격권 실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조대엽 등, 2018). 즉, 노동인권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넘어 노동자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우리 사회는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존중 문화

1) 조대엽·원창희·송태수·정현주·김성희(2018), 노동인권 교재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가 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인권익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와 활동,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환경 보호 등은 노동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제도와 문화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문호 등, 2020²⁾).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2020년도에 “노동인권익의식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국민들의 노동인권익의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노동인권익의식에 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고용 및 노동관련 정책수립, 노동교육 등에 활용되어 국내 고용 및 노동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익의식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개발한 “노동인권익의식 측정지표”는 크게 인식 및 정서, 행동 등에 근거하여 노동인권익의식 관련 세부 영역으로 개별 법적 권리, 집단 법적 권리 및 사회·인격적 권리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노동인권익의식 측정지표”에 활용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개별 법적 권리부분에서는 균등한 처우, 근로계약, 최저임금, 법정 노동시간, 휴식, 여성노동자 보호, 청소년 노동자 보호,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였다. 둘째, 집단 법적 권리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등을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인격적 권리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 교육권, 실업 시의 사회보장, 인간존엄의 권리, 공정분배의 권리 등을 조사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현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과 미래 노동자인 학생,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노동자 인권익의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문호·김성환, 박석모·박완순(2020), 노동인권익의식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조사설계

[표 1] 조사설계 구조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114명
표본추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년 10월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분석도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이용해 분석
조사기간	2020. 12. 10. ~ 12. 16. <3일 7일간>
조사주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한국조직역량개발원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3. 조사 내용

[표 2] 조사내용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 문항
개별법적 권리	균등한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신분·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 차별적 상황 발생 시 적극적 행동을 할
	근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계약을 맺어야 • 미 작성 시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법정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상한선 지켜야 • 초과 시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보장받아야 • 보장받지 못한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 보호받지 못한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안전과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 위협을 받는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 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집단법적 권리	단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단체행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 불이익 받는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가입, 탈퇴)을 부당하게 간섭·개입 행위 금지해야 • 부당하게 간섭·개입한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세부 문항
사회· 인격적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교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실업 시의 사회 보장 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인간존엄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 존엄이 무시된다면 적극적 행동을 할 것이다
	공정분배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응답자 특성 (인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남, 여) • 나이 • 혼인 여부 • 월평균 가구소득 • 학력 • 전공 • 거주 지역 • 직장 유형 • 종사 산업 분야 • 종사 직업 • 근로 형태(근로자,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 평균 근로시간 • 총 직장 근무 기간

4. 응답자 구성

[표 3] 조사 응답자 구성 표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자	551	49.5
여자	563	50.5
연령		
10대	65	5.7
20대	171	15.4
30대	166	14.9
40대	202	18.1
50대	211	18.9
60대 이상	300	26.9
거주 지역		
서울	208	18.7
인천/경기	347	31.1
대전/충청/세종	118	10.6
광주/전라	111	10.0
대구/경북	113	10.2
부산/울산/경남	171	15.3
강원/제주	46	4.2
지역 규모		
대도시	486	43.6
중소도시	515	46.2
농어촌(읍, 면)	113	10.1
직업		
사무/행정직	260	23.3
연구/공학기술직	34	3.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9	1.7
전문직	86	7.7
경영관리직	50	4.5
판매/영업/서비스직	107	9.6
단순노동직	80	7.2
전업주부	153	13.7
학생	123	11.0
기타	202	18.1

4. 응답자 구성 계속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결혼 여부		
기혼	658	59.1
미혼	456	40.9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	80	7.2
지위		
임금근로자	573	5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6	10.4
무급가족종사자	10	0.9
고용형태2		
정규직	453	40.7
비정규직	88	7.9
직장 유형		
민간회사(개인사업체 포함)	462	41.5
공공기관 및 단체	174	15.6
기타	53	4.8
학력		
고졸이하	257	23.1
전문대(재학/졸업)	181	16.2
4년제 대학(재학/졸업)	544	48.8
대학원 재학 이상	132	11.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43	12.8
200~300만원 미만	192	17.2
300~400만원 미만	228	20.5
400~500만원 미만	181	16.2
500~600만원 미만	142	12.7
600만원 이상	228	20.5

2020년 국민 노동인권익식조사

CHAPTER 2

조사결과 요약

1. 결과 요약

▣ 개별법적 권리 영역

- ❖ 50대 이상, 기혼,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장시간근로자(52시간 이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전문대 재학/졸업자, 주부의 상대적 노동인권의식수준이 낮음
 - 특히 균등한 처우, 청소년노동자/여성노동자 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인권의식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낮으며, 여성과 청소년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남성과 전문대 재학/졸업자가 낮게 나타났으며,
 -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은 '안전과 보건'의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남

▣ 집단법적 권리 영역

- ❖ 50대 이상, 자영업자, 기혼,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민간부문은 '집단법적 권리영역'의 상대적 인권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남
 - 특히,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행동권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인권의식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모든 항목에서 낮고,
 - 민간부문과 전업주부는 단체행동권이, 여성은 사용자 지배·개입 금지의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사회·인격적 권리 영역

- ❖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50대 이상, 기혼은 '집단법적 권리영역'의 상대적 인권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남
 - 특히, 공정분배의 권리,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인권의식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 자영업자는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이, 경영관리직은 공정분배의 권리의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남

[영역 1] 개별법적 권리 영역

❖ 문1. 균등한 처우

(1.1) 모든 노동자는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평균: 4.14점, 동의: 82.4%)

- 50대 이상보다 10대와 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1.2)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3.90점, '그렇다': 71.8%)

-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4년제 재학/졸업이, 근로시간 15시간미만보다 40~50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2. 근로계약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평균: 4.39점, 동의: 90.6%)

- 50대 이상보다 10대와 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전업주부보다는 학생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52시간 이상보다는 40~52시간, 특수고용직보다는 일반직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3. 최저임금

(3.1)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평균: 4.29점, 동의: 85.7%)

- 50대 이상보다 10대·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근로시간 52시간 이상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자영업자보다는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3.2) 직장이나 회사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4.1점, '그렇다': 78.7%)

- 50대 이상보다 1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4년제 재학/졸업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4. 법정 노동시간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평균: 4.17점, 동의: 81.7%)

- 남성보다 여성이, 50대 이상보다 10대·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5. 휴식 및 휴가

모든 노동자는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30점, 동의: 86.7%)

-50대 이상보다 10대와 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52시간 이상보다 40~52시간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6. 여성노동자 보호

(6.1)모든 여성노동자는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한다.(평균: 4.21점, 동의: 83.0%)

-남성보다 여성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의식수준이 높음

(6.2)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3.96점, '그렇다':72.9%)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4년제 재학/졸업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7. 청소년노동자 보호

(7.1)모든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평균: 4.19점, 동의: 82.4%)

-남성보다 여성이, 50대 이상보다 40대가, 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52시간 이상보다 40~52시간이, 52시간 이상보다 15~40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7.2)청소년의 노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4.06점, '그렇다': 78.3%)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4년제 재학/졸업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8. 안전과 보건

(8.1)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52점, 동의: 93.2%)

-20대와 50대보다 40대가,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그리고 52시간 이상보다 40~52시간이,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보다 300~400만원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8.2)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4.16점, '그렇다': 81.0%)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9.1)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55점, 동의: 93.5%)

(9.2)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평균: 4.21점, '그렇다': 82.1%)

[영역 2] 집단법적 권리 영역

❖ 문10. 단결권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평균: 3.90점, 동의: 71.0%)

-50대 이상보다 10대와 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냄

❖ 문1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평균: 3.96점, 동의: 74.4%)

-50대 이상보다 10대와 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냄

❖ 문12.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평균: 3.50점, 동의: 52.1%)

-50대 이상보다 10대·20대·30대·40대가 그리고 30대와 40대보다 1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전업주부보다 학생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냄

❖ 문13.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13.1)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쟁의행위 포함), 해당 관청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평균: 4.06점, 동의: 78.4%)

-50대보다 10대·20대·3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냄

(13.2)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4.02점, '그렇다': 75.2%)

-50대보다 1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냄

❖ 문14.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14.1)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평균: 4.15점, 동의: 80.6%)

-50대보다 10대와 40대가, 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50시간 이상보다 40~52시간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냄

(14.2)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평균: 4.01점, '그렇다': 75.4%)

-여성보다 남성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인식수준이 높음

[영역 3] 사회·인격적 권리 영역

❖ 문15.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46점, 동의: 92.7%)

-여성보다 남성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 그리고 52시간 이상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16.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균:4.34점, 동의: 9.3%)

-50대 이상보다 40대가,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17. 교육권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33점, 동의:89.1%)

-50대 이상보다 10대와 4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18.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평균: 4.15점, 동의: 81.7%)

❖ 문19. 인간존엄의 권리

(19.1)모든 사람은 노동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평균: 4.41점, 동의:90.6%)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19.2)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시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4.24점, '그렇다': 82.0%)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 문20. 공정분배의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한다.(평균: 4.07점, 동의: 76.2%)

-50대 이상보다 10대가, 기혼보다 미혼이, 경영관리직보다 전문직과 학생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나타냄

2. 결과 조사표

[표 0.0] 결과조사 요약표 ... 평균점수/동의를

영역	변수	조사 문항	평균(5점)	동의(100%)
	총계		4.16	81.3
	소계		4.21	82.9
개별법적 권리	균등한 처우	1.1 의식	4.14	82.4
		1.2 행동의지	3.90	71.8
	근로계약	2 의식	4.39	90.6
	최저임금	3.1 의식	4.29	85.7
		3.2 행동의지	4.10	78.7
	법정 근로시간	4. 의식	4.17	81.7
	휴식	5. 의식	4.30	86.7
	여성노동자 보호	6.1 의식	4.21	83.0
		6.2 행동의지	3.96	72.9
	청소년 노동자 보호	7.1 의식	4.19	82.4
7.1 행동의지		4.06	78.3	
안전과 보건	8.1 의식	4.52	93.2	
	8.2 행동의지	4.16	8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9.1 의식	4.55	93.5	
	9.2 행동의지	4.21	82.1	
	소계		3.94	72.4
집단법적 권리	단결권	10. 의식	3.90	71.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11. 의식	3.96	74.4
	단체행동권	12. 의식	3.50	52.1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13.1 의식	4.06	78.4
		13.2 행동의지	4.02	75.2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14.1 의식	4.15	80.6	
	14.2 행동의지	4.01	75.4	
	소계		4.29	86.5
사회·인격 적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15. 의식	4.46	92.7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16. 의식	4.34	93.0
	교육권	17. 의식	4.33	89.1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	18. 의식	4.15	81.7
	인간존엄의 권리	19.1 의식	4.41	90.6
		19.2 행동의지	4.24	82.0
	공정분배의 권리	20. 의식	4.07	76.2

2020년 국민 노동인권익식조사

CHAPTER 3

세부 분석결과

1 개별법적 권리영역

2 집단법적 권리영역

3 사회·인격적 권리영역

1. 개별법적 권리영역

1. 균등한 처우

(문1.1) 모든 노동자는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평균 4.14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1.1)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에 82.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모든 노동자는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4.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13.3%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1)

- ▶ **‘균등한 처우’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2.9%가 ‘동의’,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1.8%가 ‘동의’로 3.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동의’로는 10대가 96.8%, 20대가 84.3%, 30대가 81.4%, 40대가 87.2%, 50대가 81.1%, 60대 이상의 76.6%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2.4%, 전문대 83.4%, 대졸(4년)이상 82.3%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가 4.3%, 대졸(4년)이상이 4.6%, 전문대가 2.8%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0.8%와 비정규직의 81.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5.7%와 비정규직의 2.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6.3%가 ‘동의’, 0.0%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1.0%가 ‘동의’, 5.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2.9%, 공공기관 및 단체 78.7%, 기타 7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6%, 공공기관 및 단체 4.0%, 기타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81.6%, 연구공학기술IT 91.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8% 전문직 83.7%,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83.2%, 단순노무운송직 76.3%, 전업주부 78.4%, 학생 87.8%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9.8%, 200~300만원 80.7%, 300~400만원 84.2%, 400~500만원 87.3%, 500~600만원 82.4%, 600만원 이상이 79.8%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0만원 이상에서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2.2%, 경기·인천 84.2%, 부산·울산·경남 74.4%, 대전·충청·세종 84.4%, 대구·경북 82.8%, 광주·전라 84.8%, 강원·제주가 73.6%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산·울산·경남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1)

▶ '균등한 처우'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13),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3),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19), 대학원 이상(평균 4.1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성별) 남성(평균 4.16)과 여성(평균 4.13)간의 평균의 차이(.02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45), 20대(평균 4.19), 30대(평균 4.14), 40대(평균 4.28), 50대 이상(평균 4.0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와 40대($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균등한 처우'에 대한 인권의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와 40대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12)과 비정규직(평균 4.1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07)과 미혼(평균 4.25)간의 평균차이(.17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균등한 처우'에 대한 국민의식은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15)과 공공부문(평균 4.14)간의 평균차이(.017)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8),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3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58),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7), 경영관리직(평균 4.1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2), 단순노동직(평균 4.06), 전업주부(평균 4.00) 학생(평균 4.2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93), 15~40시간 미만(평균 4.21), 40~52시간 미만(평균 4.16), 52시간 이상(평균 4.0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16)과 비임금(평균 4.10)간의 평균차이(.05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10), 200~300만원 미만(평균 4.12), 300~400만원 미만(평균 4.17), 400~500만원 미만(평균 4.19), 500만원 이상(평균 4.13)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6)과 일반(평균 4.13)간의 평균차이(.13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1.2) 직장이나 일터에서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연령·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3.90점 ... 5점 기준)

☞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1.2)

- ▶ 우리 국민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성별·국적·신앙·학력·지역·장애여부·혼인여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72.8%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23.1%, ‘그렇다’ 49.7%, ‘보통이다’ 22.3%, ‘그렇지 않다’ 4.1%, ‘전혀 그렇지 않다’ 0.8%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2)

▶ '차별 받을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4.6%가 '그렇다', 4.5%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1.0%가 '동의'로 5.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73.4%, 20대가 72.5%, 30대가 74.1%, 40대가 75.7%, 50대가 72.5%, 60대 이상의 70.3%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60대 이상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70.3%, 전문대 75.1%,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 73.1%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5.9%, 전문대가 7.7% 대졸(4년)이상이 3.9%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3.0%와 비정규직의 73.9%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4.9%와 비정규직의 3.4%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8.4%가 '그렇다', 7.6%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2.4%가 '그렇다', 4.7%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2.5%, 공공기관 및 단체 70.7%, 기타 71.7%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8%, 공공기관 및 단체 5.2%, 기타 7.5%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1.5%, 연구공학기술IT 64.7%,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8.9% 전문직 75.6%,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72.0%, 단순노무운송직 67.5%, 전업주부 66.6%, 학생 72.3%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연구공학기술IT직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3.7%, 200~300만원 67.2%, 300~400만원 75.0%, 400~500만원 75.1%, 500~600만원 78.1%, 600만원 이상의 75.9%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00만원 미만에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2.6%, 경기·인천 72.3%, 부산·울산·경남 66.4%, 대전·충청·세종 75.2%, 대구·경북 77.9%, 광주·전라 76.1%, 강원·제주가 58.8%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강원·제주 8.8%, 부산·울산·경남이 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2)

▶ ‘차별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3.95)과 여성(평균 3.85)간의 평균의 차이(.09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03), 20대(평균 3.89), 30대(평균 3.96), 40대(평균 3.99), 50대 이상(평균 3.83)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3.84), 전문대(평균 3.73), 4년제 대학(평균 3.97), 대학원 이상(평균 3.96)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전문대 재학/졸업과 4년제 대학 재학/졸업간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차별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노동인권 의식은 4년제 재학/졸업이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3.92)과 비정규직(평균 3.91)간의 평균차이(.01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86)과 미혼(평균 3.96)간의 평균차이(.09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3.89)과 공공부문(평균 3.90)간의 평균차이(.00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3.87), 연구·공학전문직(평균 3.8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01), 경영관리직(평균 4.0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3.90), 단순노동직(평균 3.81), 전업주부(평균 3.75) 학생(평균 3.9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56), 15~40시간미만(평균 3.85), 40~52시간미만(평균 3.95), 52시간이상(평균 3.86)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40~52시간 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차별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15시간미만보다 40~52시간미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3.90)과 비임금(평균 3.92)간의 평균차이(.0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80), 200~300만원 미만(평균 3.77), 300~400만원

미만(평균 3.94), 400~500만원 미만(평균 3.93), 500만원 이상(평균 4.35)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84)과 일반(평균 3.91)간의 평균차이(.07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2. 근로계약

(문2)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평균 4.39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에 90.6%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50.2%, ‘동의하는 편이다’ 40.4%, ‘보통이다’ 7.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5%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1%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모든 노동자는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

-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6%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 남자는 90.2%가 ‘동의’, 1.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90.9%가 ‘동의’로 1.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 10대가 96.9%, 20대가 87.7%, 30대가 88.5%, 40대가 96.5%, 50대가 90.5%, 60대 이상의 88.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 고졸이하 89.8%, 전문대 87.9%, 대졸(4년)이상 91.6%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2.3%, 전문대 0.6%, 대졸(4년)이상 1.6%

으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90.7%와 비정규직의 93.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1.1%와 비정규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자가 없었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6.3%가 '동의', 2.5%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91.3%가 '동의', 1.1%가 '동의하지 않는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91.8%, 공공기관 및 단체 87.4%, 기타 92.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0.6%, 공공기관 및 단체 1.7%, 기타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90.4%, 연구공학기술IT 97.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7% 전문직 89.5%, 경영관리직 86.0%, 판매·영업·서비스직 92.5%, 단순노무운송직 87.6%, 전업주부 88.2%, 학생 90.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전업주부 2.6%, 경영관리직 2.0%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6.1%, 200~300만원 미만 89.6%, 300만원~400만원 미만 91.7%, 400~500만원 미만 90.6%, 500~600만원 미만 90.8%, 600만원 이상이 93.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수준(4.2%)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90.9%, 경기·인천 93.1%, 부산·울산·경남 86.7%, 대전·충청·세종 90.4%, 대구·경북 88.5%, 광주·전라88.0%, 강원·제주 91.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원·제주 2.9%, 대구·경북 2.5%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2)

▶ '근로계약'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41)과 여성(평균 4.37)간의 평균의 차이(.03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64), 20대(평균 4.43), 30대(평균 4.42), 40대(평균 4.52), 50대 이상(평균 4.29)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와 40대($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와 40대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37),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32),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43), 대학원 이상(평균 4.3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41)과 비정규직(평균 4.47)간의 평균차이(.06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34)과 미혼(평균 4.46)간의 평균차이(.12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근로계약'에 대한 국민들의 노동인권 의식은 기혼보다 미혼들의 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41)과 공공부문(평균 4.44)간의 평균차이(.02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37),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6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79),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8), 경영관리직(평균 4.32),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46), 단순노동직(평균 4.33), 전업주부(평균 4.16) 학생(평균 4.52)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와 학생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학생이 전업주부보다 '근로계약' 노동인권 의식 더 높음을 의미한다.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4.12), 15시간~40시간 미만(평균 4.41), 40시간 ~ 52시간(평균 4.46), 52시간 이상(평균 4.16)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p < .05$)과 52시간 이상($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15시간 미만, 52시간 이상과 비교해서 40~52시간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43)과 비임금(평균 4.31)간의 평균차이(.1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28), 200~300만원 미만(평균 4.34), 300~400만원 미만(평균 4.44), 400~500만원 미만(평균 4.35), 500만원 이상(평균 4.45)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3)과 일반(평균 4.42)간의 평균차이(.19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특수고용직보다 일반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최저임금

(문3.1)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평균 4.29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3.1)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에 85.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7.2%, ‘동의하는 편이다’ 38.5%, ‘보통이다’ 11.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7%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5%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6%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3.1)

-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4.7%가 ‘동의’, 3.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6.7%가 ‘동의’로 2.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3.7%, 20대가 86.0%, 30대가 84.3%, 40대가 91.6%, 50대가 82.9%, 60대 이상의 82.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5.6%, 전문대 81.7%, 대졸(4년)이상 86.8%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2.7%, 전문대가 2.2%, 대졸(4년)이상이 3.7%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5.4%와 비정규직의 86.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5%와 비정규직의 3.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5.1%가 ‘동의’, 2.5%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6.0%가 ‘동의’, 3.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5.9%, 공공기관 및 단체 85.1%, 기타 88.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0%, 공공기관 및 단체 3.5%, 기타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86.9%, 연구공학기술IT 94.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8.9% 전문직 87.2%, 경영관리직 78.0%, 판매·영업·서비스직 81.3%, 단순노무운송직 88.8%, 전업주부 83.0%, 학생 87.8%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단순노무운송직이 6.3%, 경영관리직이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3.3%, 200~300만원 미만 86.5%, 300만원~400만원 미만 84.6%, 400~500만원 미만 87.8%, 500~600만원 미만 88.7%, 600만원 이상이 84.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4.8%)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8.0%, 경기·인천 86.5%, 부산·울산·경남 81.5%, 대전·충청·세종 87.3%, 대구·경북 80.3%, 광주·전라 85.8%, 강원·제주 88.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산·울산·경남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3.1)

▶ ‘최저임금’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27)과 여성(평균 4.31)간의 평균의 차이(.03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66), 20대(평균 4.37), 30대(평균 4.30), 40대(평균 4.45), 50대 이상(평균 4.16)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와 40대($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와 40대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3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18),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33), 대학원 이상(평균 4.2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30)과 비정규직(평균 4.34)간의 평균차이(.06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2)과 미혼(평균 4.39)간의 평균차이(.171)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기존 국민보다 미혼 국민들의 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29)과 공공부문(평균 4.35)간의 평균차이(.06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28),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5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47),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8), 경영관리직(평균 4.1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3), 단순노동직(평균 4.39), 전업주부(평균 4.12) 학생(평균 4.4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4.07), 15~40시간 미만(평균 4.34), 40~52시간 미만(평균 4.37), 52시간 이상(평균 3.9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15~40시간 미만($p < .05$)과 40~52시간($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52시간 이상보다 15~40시간 미만, 40~52시간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34)과 비임금(평균 4.14)간의 평균차이(.2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의 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24), 200~300만원 미만(평균 4.28), 300~400만원 미만(평균 4.28), 400~500만원 미만(평균 4.30), 500만원 이상(평균 4.3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1)과 일반(평균 4.31)간의 평균차이(.1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W

(문3.2) 직장이나 회사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1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3.2)

- ▶ 우리 국민은 ‘직장이나 회사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78.7%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35.6%, ‘그렇다’ 43.1%, ‘보통이다’ 17.7%, ‘그렇지 않다’는 3.1%, ‘전혀 그렇지 않다’는 0.4%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3.2)

▶ ‘최저임금 미만 받을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7.9%가 ‘그렇다’, 3.6%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9.5%가 ‘동의’로 3.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82.9%, 20대가 83.0%, 30대가 77.7%, 40대가 83.6%, 50대가 74.9%, 60대 이상의 75.3%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50대 이상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0.9%, 전문대 75.1%, 대졸(4년)이상 79.0%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3.9%, 전문대가 3.4% 대졸(4년)이상이 3.5%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6.2%와 비정규직의 81.8%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3%와 비정규직의 3.4%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8.8%가 ‘그렇다’, 7.5%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7.8%가 ‘그렇다’, 3.3%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7.5%, 공공기관 및 단체 74.1%, 기타 79.2%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9%, 공공기관 및 단체 3.4%, 기타 3.8%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8.9%, 연구공학기술IT 79.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9.0% 전문직 76.7%, 경영관리직 80.0%, 판매·영업·서비스직 74.8%, 단순노무운송직 67.5%, 전업주부 79.1%, 학생 82.9%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단순노무운송직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3.5%, 200~300만원 78.1%, 300~400만원 79.4%, 400~500만원 82.9%, 500~600만원 73.9%, 600만원 이상의 81.5%가 ‘그렇다’로 나

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00만원 미만에서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7.4%, 경기·인천 78.9%, 부산·울산·경남 78.8%, 대전·충청·세종 83.3%, 대구·경북 74.6%, 광주·전라 78.3%, 강원·제주가 73.6%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강원·제주 5.9%, 부산·울산·경남이 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3.2)

- ▶ ‘최저임금을 못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10)과 여성(평균 4.10)간의 평균의 차이(.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41), 20대(평균 4.21), 30대(평균 4.10), 40대(평균 4.20), 50대 이상(평균 3.99)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과 10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1$)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시**’에 관한 노동인권의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1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95),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17), 대학원 재학 이상(평균 4.05)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전문대 재학/졸업과 4년제 대학 재학/졸업 간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최저임금을 못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노동인권 의식은 4년제 재학/졸업이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07)과 비정규직(평균 4.13)간의 평균차이(.05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04)과 미혼(평균 4.20)간의 평균차이(.16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최저임금을 못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노동인권 의식은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07)과 공공부문(평균 4.05)간의 평균차이(.02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6),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1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1),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7), 경영관리직(평균 4.0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07), 단순노동직(평균 3.94), 전업주부(평균 4.00) 학생(평균 4.2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74), 15~40시간미만(평균 4.07), 40~52시간(평균 4.13), 52시간이상(평균 3.84)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40~52시간 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15시간미만보다 40~52시간미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10)과 비임금(평균 3.98)간의 평균차이(.12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01), 200~300만원 미만(평균 4.06), 300~400만원 미만(평균 4.11), 400~500만원 미만(평균 4.14), 500만원 이상(평균 4.1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94)과 일반(평균 4.09)간의 평균차이(.15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4. 법정 노동시간

(문4)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 (평균 4.17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에 81.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0.9%, ‘동의하는 편이다’ 40.8%, ‘보통이다’ 13.7%,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9%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7%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한 사람의 질을 지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4.6%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법정 노동시간’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8.0%가 ‘동의’, 6.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5.3%가 ‘동의’로 2.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3.7%, 20대가 84.8%, 30대가 83.2%, 40대가 91.6%, 50대가 76.8%, 60대 이상 73.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2.8%, 전문대 79.5%, 대졸(4년)이상 81.8%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5.1%, 전문대가 3.4%, 대졸(4년)이상이 4.7%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1.7%와 비정규직의 78.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5.5%와 비정규직의 2.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0.1%가 ‘동의’, 5.0%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2.1%가 ‘동의’, 4.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3.1%, 공공기관 및 단체 80.5%, 기타 7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7%, 공공기관 및 단체 4.6%, 기타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3.1%, 연구공학기술IT 9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4.2% 전문직 87.2%,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80.4%, 단순노무운송직 80.1%, 전업주부 77.8%, 학생 88.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이 14.0%, 단순노무운송직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9.1%, 200~300만원 미만 84.9%, 300만원~400만원 미만 80.7%, 400~500만원 미만 81.7%, 500~600만원 미만 80.9%, 600만원 이상 82.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00~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수준(5.7%)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0.3%, 경기·인천 84.2%, 부산·울산·경남 75.2%, 대전·충청·세종 86.4%, 대구·경북 77.0%, 광주·전라 80.5%, 강원·제주 79.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산·울산·경남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4)

▶ ‘법정 노동시간’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08)과 여성(평균 4.26)간의 평균의 차이(.18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10대(평균 4.52), 20대(평균 4.27), 30대(평균 4.25), 40대(평균 4.40), 50대 이상(평균 3.98)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 20대($p < .01$), 30대($p < .05$), 40대($p < .01$)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

- 다. 즉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40대 구간의 모든 연령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2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9),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20), 대학원 이상(평균 4.0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17)과 비정규직(평균 4.17)간의 평균차이(.00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10)과 미혼(평균 4.27)간의 평균차이(.16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기혼 국민보다 미혼 국민들의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17)과 공공부문(평균 4.22)간의 평균차이(.04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18),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47),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53),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3), 경영관리직(평균 3.92),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13), 단순노동직(평균 4.13), 전업주부(평균 4.07) 학생(평균 4.3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81), 15~40시간 미만(평균 4.19), 40~52시간 미만(평균 4.23), 52시간 이상(평균 3.96)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과 15시간 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 미만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21)과 비임금(평균 3.99)간의 평균차이(.22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들의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12), 200~300만원 미만(평균 4.21), 300~400만원 미만(평균 4.19), 400~500만원 미만(평균 4.18), 500만원 이상(평균 4.1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09)과 일반(평균 4.18)간의 평균차이(.09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5. 휴식 및 휴가

(문5) 모든 노동자는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30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에 86.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5.7%, ‘동의하는 편이다’ 41.0%, ‘보통이다’ 11.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8%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4%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모든 노동자는 적절한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2%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적절한 휴식 및 휴가 보장’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6.2%가 ‘동의’, 2.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7.2%가 ‘동의’로 2.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3.7%, 20대가 88.3%, 30대가 87.3%, 40대가 92.5%, 50대가 84.3%, 60대 이상 81.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이 3.4%, 10대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6.3%, 전문대 88.4%, 대졸(4년)이상 86.4%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2.4%, 전문대가 0.6%, 대졸(4년)이상이 2.7%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7.9%와 비정규직의 86.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2.0%와 비정규직의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6.3%가 ‘동의’, 0.0%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6.9%가 ‘동의’, 2.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7.5%, 공공기관 및 단체 86.2%, 기타 83.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1.7%, 공공기관 및 단체 1.1%, 기타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87.7%, 연구공학기술IT 91.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7% 전문직 89.6%, 경영관리직 84.0%, 판매·영업·서비스직 85.0%, 단순노무운송직 86.3%, 전업주부 83.6%, 학생 90.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3%, 경영관리직 4.0%, 전업주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9.8%, 200~300만원 미만 84.9%, 300만원~400만원 미만 87.7%, 400~500만원 미만 90.1%, 500~600만원 미만 88.0%, 600만원 이상이 88.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수준(4.9%)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8.0%, 경기·인천 87.3%, 부산·울산·경남 85.8%, 대전·충청·세종 89.9%, 대구·경북 79.5%, 광주·전라 87.0%, 강원·제주 82.4%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경기·인천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5)

▶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27)과 여성(평균 4.33)간의 평균의 차이(.05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48), 20대(평균 4.42), 30대(평균 4.38), 40대(평균 4.48), 50대 이상(평균 4.1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5$), 20대($p < .01$), 30대($p < .05$), 40대($p < .01$)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40대 구간의 모든 연령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28),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29),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31), 대학원 이상(평균 4.2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32)과 비정규직(평균 4.36)간의 평균차이(.04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4)과 미혼(평균 4.37)간의 평균차이(.12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휴식과 휴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기혼 국민보

다 미혼 국민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31)과 공공부문(평균 4.34)간의 평균차이(.02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29),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5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68),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7), 경영관리직(평균 4.1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31), 단순노동직(평균 4.30), 전업주부(평균 4.13) 학생(평균 4.4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4.00), 15~40시간 미만(평균 4.28), 40~52시간 미만(평균 4.37), 52시간 이상(평균 4.07)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p < .05$)과 52시간 이상($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휴식 및 휴가**’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15시간 미만, 52시간 이상보다 40~52시간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35)과 비임금(평균 4.13)간의 평균차이(.21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휴식과 휴가**’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들의 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17), 200~300만원 미만(평균 4.28), 300~400만원 미만(평균 4.34), 400~500만원 미만(평균 4.33), 500만원 이상(평균 4.3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5)과 일반(평균 4.31)간의 평균차이(.06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6. 여성노동자 보호

(문6.1) 모든 여성노동자는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한다.

(평균 4.21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6.1)

- ▶ 우리 국민은 ‘모든 여성노동자는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한다’에 83.0%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1.5%, ‘동의하는 편이다’ 41.5%, ‘보통이다’ 14.2%, ‘동의하지 않는다’

편이다' 2.2%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6%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모든 여성노동자는 건강과 모성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8%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6.1)

▶ '여성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9.8%가 '동의', 5.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6.0%가 '동의'로 0.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86.0%, 20대가 78.4%, 30대가 77.8%, 40대가 87.1%, 50대가 84.4%, 60대 이상 84.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가 6.4%, 30대가 5.4%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4.0%, 전문대 81.8%, 대졸(4년)이상 82.8%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3.1%, 전문대가 2.2%, 대졸(4년)이상이 2.9%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2.7%와 비정규직의 84.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3%와 비정규직의 2.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1.3%가 '동의', 2.5%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3.1%가 '동의', 3.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3.7%, 공공기관 및 단체 81.1%, 기타 81.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0%, 공공기관 및 단체 3.4%, 기타 3.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3.1%, 연구공학기술IT 88.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9.0% 전문직 88.4%, 경영관리직 82.0%, 판매·영업·서비스직 79.4%, 단순노무운송직 80.0%, 전업주부 82.3%, 학생 81.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단순노무운전직 6.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1.2%, 200~300만원 미만 84.4%, 300만원~400만원 미만 79.4%, 400~500만원 미만 82.4%, 500~600만원 미만 83.8%, 600만원 이상이

86.4%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500~6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수준(4.9%)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1.8%, 경기·인천 83.8%, 부산·울산·경남 84.0%, 대전·충청·세종 87.9%, 대구·경북 76.2%, 광주·전라 80.4%, 강원·제주 79.4%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원·제주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6.1)

▶ ‘여성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11)과 여성(평균 4.30)간의 평균의 차이(.19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여성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 10대(평균 4.31), 20대(평균 4.19), 30대(평균 4.10), 40대(평균 4.23), 50대 이상(평균 4.23)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2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8),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22), 대학원 이상(평균 4.3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19)과 비정규직(평균 4.32)간의 평균차이(.13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1)과 미혼(평균 4.21)간의 평균차이(.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20)과 공공부문(평균 4.18)간의 평균차이(.02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16),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3), 경영관리직(평균 4.2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19), 단순노동직(평균 4.09), 전업주부(평균 4.14) 학생(평균 4.2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88), 15~40시간 미만(평균 4.21), 40~52시간 미만(평균 4.25), 52시간 이상(평균 4.06)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 과 15시간 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여성노동자 보

호'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21)과 비임금(평균 4.17)간의 평균차이(.03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19), 200~300만원 미만(평균 4.23), 300~400만원 미만(평균 4.16), 400~500만원 미만(평균 4.20), 500만원 이상(평균 4.2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13)과 일반(평균 4.21)간의 평균차이(.08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6.2)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3.96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6.2)

▶ 우리 국민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72.9%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여성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28.8%, '그렇다' 44.1%, '보통이다' 22.4%, '그렇지 않다'는 3.8%,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6.2)

▶ '여성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0.6%가 ‘그렇다’, 5.8%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5.1%가 ‘동의’로 3.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73.5%, 20대가 69.6%, 30대가 69.3%, 40대가 75.2%, 50대가 75.9%, 60대 이상의 73.0%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20대 7.0%, 60대 이상 5.7%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72.3%, 전문대 69.6%, 대졸(4년)이상 74.1%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3.5%, 전문대가 5.6% 대졸(4년)이상이 5.0%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3.0%와 비정규직의 76.1%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4.2%와 비정규직의 2.3%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3.8%가 ‘그렇다’, 5.0%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3.3%가 ‘그렇다’, 4.3%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2.3%, 공공기관 및 단체 69.5%, 기타 79.2%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7%, 공공기관 및 단체 6.3%, 기타 3.8%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1.2%, 연구공학기술IT 73.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8.4% 전문직 77.9%,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72.0%, 단순노무운송직 66.3%, 전업주부 70.6%, 학생 68.3%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단순노무운송직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5.8%, 200~300만원 70.3%, 300~400만원 69.3%, 400~500만원 80.1%, 500~600만원 71.8%, 600만원 이상의 78.1%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300~400만원 6.6%, 200만원 미만 6.3%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69.2%, 경기·인천 72.1%, 부산·울산·경남 73.4%, 대전·충청·세종 77.2%, 대구·경북 74.6%, 광주·전라 75.0%, 강원·제주 64.8%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서울과 강원·제주 5.8%, 대구·경북이 5.7%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6.2)

- ▶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 행동여부’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3.91)과 여성(평균 4.01)간의 평균의 차이(.09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05), 20대(평균 3.90), 30대(평균 3.89), 40대(평균 3.96), 50대 이상(평균 3.99)간의 평균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3.9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78),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02), 대학원 이상(평균 4.05)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간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노동인권 의식은 4년제 재학/졸업이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3.96)과 비정규직(평균 4.08)간의 평균차이(.12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96)과 미혼(평균 3.96)간의 평균차이(.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3.95)과 공공부문(평균 3.83)간의 평균차이(.12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3.91),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0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00),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08), 경영관리직(평균 4.0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3.98), 단순노동직(평균 3.81), 전업주부(평균 3.87) 학생(평균 3.85)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63), 15~40시간미만(평균 3.98), 40~52시간(평균 4.00), 52시간이상(평균 3.8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3.96)과 비임금(평균 3.94)간의 평균차이(.02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90), 200~300만원 미만(평균 3.93), 300~400만원 미만(평균 3.86), 400~500만원 미만(평균 4.07), 500만원 이상(평균 4.0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84)과 일반(평균 3.97)간의 평균차이(.13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7. 청소년노동자 보호

(문7.1) 모든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받아야 한다.
(평균 4.19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7.1)

- ▶ 우리 국민은 ‘모든 청소년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에 82.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0.6%, ‘동의하는 편이다’ 41.8%, ‘보통이다’ 14.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6%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8%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모든 청소년 노동자는 특별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4%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7.1)

- ▶ ‘모든 청소년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9.8%가 ‘동의’, 4.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4.9%가 ‘동의’로 2.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78.1%, 20대가 78.4%, 30대가 82.0%, 40대가 89.6%, 50대가 81.5%, 60대 이상 81.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가 5.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82.5%, 전문대 82.3%, 대졸(4년)이상 82.4%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3.5%, 전문대가 1.7%, 대졸(4년)이상이 3.9%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2.8%와 비정규직의 8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5%와 비정규직의 3.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1.3%가 ‘동의’, 2.6%가 ‘동의하지 않

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3.5%가 '동의', 3.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3.5%, 공공기관 및 단체 81.0%, 기타 86.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0%, 공공기관 및 단체 3.4%, 기타 9.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84.6%, 연구공학기술IT 88.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3.7% 전문직 83.7%, 경영관리직 82.0%, 판매·영업·서비스직 84.1%, 단순노무운송직 75.1%, 전업주부 83.0%, 학생 75.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5.8%, 단순노무운송직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6.3%, 200~300만원 미만 81.3%, 300만원~400만원 미만 80.7%, 400~500만원 미만 87.3%, 500~600만원 미만 84.5%, 600만원 이상 83.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6.3%, 300~400만원 미만 5.7%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9.8%, 경기·인천 81.5%, 부산·울산·경남 84.0%, 대전·충청·세종 87.4%, 대구·경북 78.7%, 광주·전라 82.6%, 강원·제주 85.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경기·인천 5.2%, 대구·경북 4.9%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7.1)

▶ '청소년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14)과 여성(평균 4.24)간의 평균의 차이(.1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청소년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 10대(평균 4.25), 20대(평균 4.10), 30대(평균 4.20), 40대(평균 4.36), 50대 이상(평균 4.1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과 40대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청소년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40대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13),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11),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22), 대학원 이상(평균 4.2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19)과 비정규직(평균 4.23)간의 평균차이(.042)는 통

-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1)과 미혼(평균 4.15)간의 평균차이(.05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21)과 공공부문(평균 4.19)간의 평균차이(.0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18),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3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11),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0), 경영관리직(평균 4.22),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2), 단순노동직(평균 4.03), 전업주부(평균 4.12) 학생(평균 4.10)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88), 15~40시간미만(평균 4.28), 40 ~ 52시간(평균 4.26), 52시간이상(평균 3.87)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과 비교하여 15시간미만($p < .05$)과 52시간이상($p < .01$)이, 15~40시간미만과 52시간이상($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15시간미만과 52시간이상보다 40~52시간 미만이 더 높고, 52시간 이상보다 15~40시간미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23)과 비임금(평균 4.10)간의 평균차이(.13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09), 200~300만원 미만(평균 4.18), 300~400만원 미만(평균 4.17), 400~500만원 미만(평균 4.25), 500만원 이상(평균 4.2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4)과 일반(평균 4.20)간의 평균차이(.04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7.2)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06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7.2)

- ▶ 우리 국민은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78.3%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32.7%, ‘그렇다’ 45.6%, ‘보통이다’ 17.9%, ‘그렇지 않다’는 3.2%, ‘전혀 그렇지 않다’는 0.6%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7.2)

- ▶ ‘청소년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7.4%가 ‘그렇다’, 4.7%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9.0%가 ‘동의’로 3.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82.8%, 20대가 71.9%, 30대가 76.5%, 40대가 83.1%, 50대가 77.7%, 60대 이상의 79.0%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20대 5.3%, 50대 이상 4.3%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77.8%, 전문대 75.7%, 대졸(4년)이상 79.2%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2.0%, 전문대가 5.6% 대졸(4년)이상이 4.1%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8.9%와 비정규직의 81.8%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4.4%와 비정규직의 1.1%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6.3%가 ‘그렇다’, 6.3%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8.9%가 ‘그렇다’, 4.0%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8.3%, 공공기관 및 단체 77.0%, 기타 86.8%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3%, 공공기관 및 단체 4.0%, 기타 3.8%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8.1%, 연구공학기술IT 76.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3.7%

전문직 81.4%, 경영관리직 90.0%, 판매·영업·서비스직 76.6%, 단순노무운송직 75.1%, 전업주부 74.5%, 학생 74.0%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단순노무운송직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9.3%, 200~300만원 75.6%, 300~400만원 77.2%, 400~500만원 84.5%, 500~600만원 74.6%, 600만원 이상의 84.7%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300~400만원 5.3%, 200만원 미만 4.9%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5.5%, 경기·인천 78.6%, 부산·울산·경남 78.8%, 대전·충청·세종 82.9%, 대구·경북 74.6%, 광주·전라 79.4%, 강원·제주 73.5%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광주·전라 6.5%, 서울 4.4%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7.2)

▶ ‘청소년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 행동’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05)과 여성(평균 4.08)간의 평균의 차이(.03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19), 20대(평균 3.96), 30대(평균 3.99), 40대(평균 4.16), 50대 이상(평균 4.07)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00), 전문대졸(평균 3.91), 대졸(평균 4.14), 석사 이상(평균 4.11)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전문대 재학/졸업과 4년제 대학 재학/졸업 간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청소년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할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관한 노동인권 의식은 4년제 재학/졸업이 전문대 재학/졸업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06)과 비정규직(평균 4.15)간의 평균차이(.08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기혼(평균 4.07)과 미혼(평균 4.05)간의 평균차이(.02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04)과 공공부문(평균 4.02)간의 평균차이(.02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0),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1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1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3), 경영관리직(평균 4.2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05), 단순노동직(평균 3.96), 전업주부(평균 3.97)학생(평균 3.9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84), 15~40시간미만(평균 4.12), 40~52시간(평균 4.09), 52시간이상(평균 3.9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06)과 비임금(평균 4.07)간의 평균차이(.00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96), 200~300만원 미만(평균 4.02), 300~400만원 미만(평균 4.03), 400~500만원 미만(평균 4.15), 500만원 이상(평균 4.1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03)과 일반(평균 4.07)간의 평균차이(.04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8. 안전과 보건

(문8.1)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52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8.1)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에 93.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59.8%, ‘동의하는 편이다’ 33.4%, ‘보통이다’ 5.9%,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0.7%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2%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은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0.9%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8.1)

▶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91.6%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94.7%가 ‘동의’로 0.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5.3%, 20대가 87.8%, 30대가 90.9%, 40대가 98.0%, 50대가 90.5%, 60대 이상 95.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가 2.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94.9%, 전문대 90.1%, 대졸(4년)이상 93.3%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0.4%, 전문대가 0.6%, 대졸(4년)이상이 1.2%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92.9%와 비정규직의 9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0.4%와 비정규직의 0.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8.8%가 ‘동의’, 2.6%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93.4%가 ‘동의’, 0.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93.7%, 공공기관 및 단체 90.2%, 기타 94.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0.6%, 공공기관 및 단체 1.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92.6%, 연구공학기술IT 10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9.4% 전문직 94.1%, 경영관리직 92.0%, 판매·영업·서비스직 93.5%, 단순노무운송직 91.3%, 전업주부 94.8%, 학생 91.9%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단순노무운송직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8.1%, 200~300만원 미만 93.3%, 300만원~400만원 미만 95.6%, 400~500만원 미만 92.8%, 500~600만원 미만 93.6%, 600만원 이상이 93.9%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2.1%, 200~300만원 미만 1.0%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93.7%, 경기·인천 92.8%, 부산·울산·경남 92.1%, 대전·충청·세종 96.0%, 대구·경북 92.6%, 광주·전라 89.1%, 강원·제주 94.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구·경북 1.6% 경기·인천 1.5%,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8.1)

▶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48)과 여성(평균 4.55)간의 평균의 차이(.06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61), 20대(평균 4.44), 30대(평균 4.48), 40대(평균 4.69), 50대 이상(평균 4.48)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20대와 40대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며($p < .01$) 40대와 50대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p < .01$) 나타났다. 즉, ‘안전과 보건’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20대와 50대보다 4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49),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45),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56), 대학원 이상(평균 4.5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53)과 비정규직(평균 4.57)간의 평균차이(.04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52)과 미혼(평균 4.51)간의 평균차이(.01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53)과 공공부문(평균 4.46)간의 평균차이(.06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45),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7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68),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62), 경영관리직(평균 4.5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58), 단순노동직(평균 4.41), 전업주부(평균 4.50) 학생(평균 4.5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4.05), 15~40시간 미만(평균 4.57), 40~52시간 미만(평균 4.57), 52시간 이상(평균 4.33)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1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15~40시간미만($p < .01$)과 40~52시간 미만($p < .01$), 그리고 40~52시간 미만과 52시간이상($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안전과 보건’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 미만과 40~52시간 미만이 더 높으며, 52시간 이상보다 40~52시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53)과 비임금(평균 4.47)간의 평균차이(.06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40), 200~300만원 미만(평균 4.48), 300~400만원 미만(평균 4.62), 400~500만원 미만(평균 4.52), 500만원 이상(평균 4.52)간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2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안전과 보건'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200만원 미만보다는 300~400만원 미만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40)과 일반(평균 4.53)간의 평균차이(.13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8.2)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16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8.2)

- ▶ 우리 국민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81.0%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을 시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38.0%, '그렇다' 43.0%, '보통이다' 16.0%, '그렇지 않다'는 2.9%, '전혀 그렇지 않다'는 0.2%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8.2)

- ▶ '안전·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을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1.7%가 '그렇다', 3.3%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0.3%가 '동의'로 2.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81.2%, 20대가 79.0%, 30대가 71.1%, 40대가 87.6%,

- 50대가 80.1%, 60대 이상의 80.4%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10대 4.7%,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2.1%, 전문대 79.0%, 대졸(4년)이상 81.2%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2.0%, 전문대가 5.0% 대졸(4년)이상이 2.9%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1.4%와 비정규직의 81.8%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7%와 비정규직의 1.1%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5.0%가 ‘그렇다’, 2.5%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1.3%가 ‘그렇다’, 3.5%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9.7%, 공공기관 및 단체 80.5%, 기타 88.7%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4%, 공공기관 및 단체 3.4%, 기타 1.9%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9.2%, 연구공학기술IT 85.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3.7% 전문직 87.2%, 경영관리직 74.0%, 판매·영업·서비스직 82.3%, 단순노무운송직 78.8%, 전업주부 78.4%, 학생 77.2%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경영관리직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2.8%, 200~300만원 80.2%, 300~400만원 82.9%, 400~500만원 84.0%, 500~600만원 78.8%, 600만원 이상의 83.7%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00만원 미만 4.9%, 600만원 이상 4.3%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9.3%, 경기·인천 80.7%, 부산·울산·경남 80.5%, 대전·충청·세종 82.8%, 대구·경북 83.6%, 광주·전라 80.4%, 강원·제주가 76.5%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강원·제주 5.9%, 서울과 광주·전라 4.3%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8.2)

▶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을 시 적극적 행동’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16)과 여성(평균 4.15)간의 평균의 차이(.01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22), 20대(평균 4.15), 30대(평균 4.15), 40대(평균 4.28), 50대 이상(평균 4.11)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15),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7),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19), 대학원 이상(평균 4.1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15)과 비정규직(평균 4.16)간의 평균차이(.00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14)과 미혼(평균 4.19)간의 평균차이(.05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11)과 공공부문(평균 4.15)간의 평균차이(.04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6),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26),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1), 경영관리직(평균 4.02),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3), 단순노동직(평균 4.13), 전업주부(평균 4.10) 학생(평균 4.1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81), 15~40시간미만(평균 4.16), 40~52시간(평균 4.18), 52시간이상(평균 4.06)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40~52시간 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없을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15시간미만보다 40~52시간미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16)과 비임금(평균 4.09)간의 평균차이(.07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06), 200~300만원 미만(평균 4.14), 300~400만원 미만(평균 4.19), 400~500만원 미만(평균 4.18), 500만원 이상(평균 4.1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10)과 일반(평균 4.14)간의 평균차이(.04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9.1) 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55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9.1)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에 93.5%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62.7%, ‘동의하는 편이다’ 30.8%, ‘보통이다’ 5.7%,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0.6%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2%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은 모든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0.8%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9.1)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92.4%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94.5%가 ‘동의’로 0.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6.8%, 20대가 90.1%, 30대가 91.5%, 40대가 96.5%, 50대가 91.0%, 60대 이상 95.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가 2.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93.7%, 전문대 90.0%, 대졸(4년)이상 94.3%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문대가 1.1%, 대졸(4년)이상이 1.0%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93.2%와 비정규직의 95.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0.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8.8%가 ‘동의’, 2.5%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93.6%가 ‘동의’, 0.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94.8%, 공공기관 및 단체 88.5%, 기타 92.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0.6%, 공공기관 및 단체 1.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91.9%, 연구공학기술IT 97.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7% 전문직 95.4%, 경영관리직 94.0%, 판매·영업·서비스직 93.5%, 단순노무운송직 91.3%, 전업주부 93.5%, 학생 93.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단순노무운송직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8.8%, 200~300만원 미만 91.7%, 300만원~400만원 미만 97.4%, 400~500만원 미만 93.9%, 500~600만원 미만 92.3%, 600만원 이상이 94.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2.8%, 500~600만원 미만이 1.4%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93.8%, 경기·인천 93.7%, 부산·울산·경남 92.0%, 대전·충청·세종 95.0%, 대구·경북 92.7%, 광주·전라 91.3%, 강원·제주 94.1%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광주·전라 2.2% 경기·인천 1.2%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9.1)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50)과 여성(평균 4.60)간의 평균의 차이(.09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 10대(평균 4.70), 20대(평균 4.48), 30대(평균 4.45), 40대(평균 4.66), 50대 이상(평균 4.55)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59),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48),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55), 대학원 이상(평균 4.5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53)과 비정규직(평균 4.65)간의 평균차이(.1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56)과 미혼(평균 4.54)간의 평균차이(.012)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55)과 공공부문(평균 4.46)간의 평균차이(.08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47),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76),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74),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65), 경영관리직(평균 4.4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60), 단순노동직(평균 4.44), 전업주부(평균 4.52) 학생(평균 4.5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4.14), 15~40시간미만(평균 4.66), 40~52시간미만(평균 4.58), 52시간이상(평균 4.3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15시간미만과 비교하여 15~40시간미만($p < .01$)과 40~52시간미만($p < .01$)이, 그리고 52시간이상과 비교하여 15~40시간미만($p < .05$)과 40~52시간미만($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15시간미만과 52시간이상보다 15~40시간미만과 40~52시간미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54)과 비임금(평균 4.56)간의 평균차이(.01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47), 200~300만원 미만(평균 4.54), 300~400만원 미만(평균 4.63), 400~500만원 미만(평균 4.58), 500만원 이상(평균 4.5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41)과 일반(평균 4.56)간의 평균차이(.14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9.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21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9.2)

- ▶ 우리 국민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82.1%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시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41.3%, ‘그렇다’ 40.8%, ‘보통이다’ 15.4%, ‘그렇지 않다’는 2.2%, ‘전혀 그렇지 않다’는 0.2%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9.2)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2.0%가 ‘그렇다’, 2.4%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2.3%가 ‘동의’로 2.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79.7%, 20대가 77.8%, 30대가 79.5%, 40대가 84.7%, 50대가 83.0%, 60대 이상의 84.3%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10대 7.8%, 20대 이상 3.0%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3.2%, 전문대 79.5%, 대졸(4년)이상 82.4%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2.3%, 전문대가 2.8% 대졸(4년)이상이 2.4%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1.4%와 비정규직의 82.9%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2.4%와 비정규직의 1.1%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3.8%가 ‘그렇다’, 2.5%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1.8%가 ‘그렇다’, 2.5%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0.5%, 공공기관 및 단체 83.9%, 기타 88.6%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0%, 공공기관 및 단체 1.1%, 기타 1.9%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0.3%, 연구공학기술IT 88.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9.0% 전문직 83.7%, 경영관리직 84.0%, 판매·영업·서비스직 84.1%, 단순노무운송직 75.1%, 전업주부 81.7%, 학생 74.8%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학생이 5.7%, 사무행정직과 단순노무운송직이 각각 3.8%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2.6%, 200~300만원 82.3%, 300~400만원 82.5%, 400~500만원 81.2%, 500~600만원 81.6%, 600만원 이상의 82.5%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300~400만원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1.2%, 경기·인천 81.0%, 부산·울산·경남 83.2%, 대전·충청·세종 85.4%, 대구·경북 84.5%, 광주·전라 80.5%, 강원·제주 73.5%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서울 3.8%, 광주·전라 3.3%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6.2)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21)과 여성(평균 4.21)간의 평균의 차이(.00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14), 20대(평균 4.12), 30대(평균 4.14), 40대(평균 4.24), 50대 이상(평균 4.26)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19),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8),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23), 대학원 이상(평균 4.3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20)과 비정규직(평균 4.24)간의 평균차이(.04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1)과 미혼(평균 4.20)간의 평균차이(.00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17)과 공공부문(평균 4.21)간의 평균차이(.03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13),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3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평균 4.37),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27), 경영관리직(평균 4.2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8), 단순노동직(평균 4.08), 전업주부(평균 4.16) 학생(평균 4.0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91), 15~40시간미만(평균 4.29), 40~52시간(평균 4.23), 52시간이상(평균 4.0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임금(평균 4.19)과 비임금(평균 4.31)간의 평균차이(.12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 소득)200만원 미만(평균 4.23), 200~300만원 미만(평균 4.22), 300~400만원 미만(평균 4.17), 400~500만원 미만(평균 4.18), 500만원 이상(평균 4.2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특수고용직(평균 4.26)과 일반(평균 4.20)간의 평균차이(.06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2. 집단법적 권리영역

10. 단결권

(문10)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3.90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에 71.0%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27.7%, ‘동의하는 편이다’ 43.3%, ‘보통이다’ 21.9%,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9%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7.1%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단결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3.0%가 ‘동의’, 7.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69.1%가 ‘동의’로 7.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82.8%, 20대가 76.6%, 30대가 71.0%, 40대가 82.2%, 50대가 67.3%, 60대 이상 60.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 13.0%, 50대 8.0%, 30대 6.0%, 20대 및 40대가 각각 3.5%로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72.6%, 전문대 73.0%, 대졸(4년)이상 69.8%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5.5%, 전문대 4.5%, 대졸(4년)이상 8.4%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1.7%와 비정규직의 69.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6.4%, 비정규직의 8.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0.1%가 ‘동의’, 6.3%가 ‘동의하지 않

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1.7%가 '동의', 6.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0.3%, 공공기관 및 단체 79.3%, 기타 56.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6.7%, 공공기관 및 단체 3.4%, 기타 17.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72.3%, 연구공학기술IT 76.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3.7% 전문직 76.8%, 경영관리직 62.0%, 판매·영업·서비스직 75.7%, 단순노무운송직 67.6%, 전업주부 62.7%, 학생 78.8%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16.0%, 전업주부 9.8%, 전문직 8.2%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4.4%, 200~300만원 미만 68.8%, 300만원~400만원 미만 73.7%, 400~500만원 미만 69.1%, 500~600만원 미만 70.4%, 600만원 이상 76.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500~600만원 9.1%, 200만원 미만 8.4% 300~400만원 7.9%, 600만원 이상 7.4%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3.6%, 경기·인천 72.3%, 부산·울산·경남 62.9%, 대전·충청·세종 72.7%, 대구·경북 69.7%, 광주·전라 67.4%, 강원·제주 73.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구·경북 9.0% 부산·울산·경남 8.9%, 경기·인천 7.8%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0)

▶ '단결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3.96)과 여성(평균 3.85)간의 평균의 차이(.1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23), 20대(평균 4.12), 30대(평균 3.98), 40대(평균 4.08), 50대 이상(평균 3.70)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01), 20대(p<.01), 30대(p<.05), 40대(p<.01)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단결권'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50대 보다 10대~4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3.82),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80),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3.99), 대학원 이상(평균 3.8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3.94)과 비정규직(평균 3.90)간의 평균차이(.043)는 통

-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81)과 미혼(평균 4.05)간의 평균차이(.23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단결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3.89)과 공공부문(평균 4.13)간의 평균차이(.23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단결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민간부분에 비해 공공부분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3.95),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1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00), 경영관리직(평균 3.64),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3.95), 단순노동직(평균 3.96), 전업주부(평균 3.66) 학생(평균 4.1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60), 15~40시간미만(평균 3.84), 40~52시간(평균 4.00), 52시간이상(평균 3.7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00)과 비임금(평균 3.62)간의 평균차이(.37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단결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자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80), 200~300만원 미만(평균 3.93), 300~400만원 미만(평균 3.92), 400~500만원 미만(평균 3.89), 500만원 이상(평균 3.9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90)과 일반(평균 3.93)간의 평균차이(.03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1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문11)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균 3.96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에 74.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28.1%, ‘동의하는 편이다’ 46.3%, ‘보통이다’ 20.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9%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5%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5.4%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3.8%가 ‘동의’, 6.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4.9%가 ‘동의’로 4.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87.5%, 20대가 74.3%, 30대가 77.7%, 40대가 80.7%, 50대가 71.1%, 60대 이상 68.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50대 8.0%, 20대 7.6%, 60대 이상 6.3%, 30대 5.4%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74.2%, 전문대 75.1%, 대졸(4년)이상 74.2%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5.1%, 전문대 6.6%, 대졸(4년)이상 5.3%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5.7%와 비정규직의 72.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7%, 비정규직의 8.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6.2%가 ‘동의’, 8.8%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4.8%가 ‘동의’, 4.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민간회사 75.5%, 공공기관 및 단체 76.5%, 기타 6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7%, 공공기관 및 단체 2.3%, 기타 15.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6.6%, 연구공학기술IT 79.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7% 전문직 75.5%, 경영관리직 68.0%, 판매·영업·서비스직 72.9%, 단순노무운송직

81.3%, 전업주부 70.6%, 학생 75.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전업주부 8.5%, 경영관리직 8.0%, 판매영업서비스직 7.5%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5.8%, 200~300만원 미만 73.5%, 300만원~400만원 미만 78.9%, 400~500만원 미만 76.2%, 500~600만원 미만 70.4%, 600만원 이상이 77.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9.8%, 500~600만원 미만 6.3%, 600만원 이상 5.3%, 400~500만원 5.0%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6.5%, 경기·인천 75.8%, 부산·울산·경남 69.0%, 대전·충청·세종 79.8%, 대구·경북 66.4%, 광주·전라 70.6%, 강원·제주 73.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산·울산·경남 8.9%, 경기·인천 6.9%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1)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3.97)과 여성(평균 3.94)간의 평균의 차이(.03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28), 20대(평균 4.01), 30대(평균 4.05), 40대(평균 4.09), 50대 이상(평균 3.81)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와 40대($p < .01$)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50대 보다 10대와 4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3.92),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90),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00), 대학원 이상(평균 3.9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02)과 비정규직(평균 3.92)간의 평균차이(.09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90)과 미혼(평균 4.04)간의 평균차이(.13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3.97)과 공공부문(평균 4.12)간의 평균차이(.14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0),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0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32),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2), 경영관리직(평균 3.86),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3.87), 단순노동직(평균 4.13), 전업주부(평균 3.75) 학생(평균 4.0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65), 15~40시간 미만(평균 3.93), 40~52시간 미만(평균 4.06), 52시간이상(평균 3.77)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과 15시간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15시간미만보다 40~52시간 미만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05)과 비임금(평균 3.70)간의 평균차이(.35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자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80), 200~300만원 미만(평균 3.98), 300~400만원 미만(평균 4.02), 400~500만원 미만(평균 3.99), 500만원 이상(평균 3.9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90)과 일반(평균 4.00)간의 평균차이(.09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12. 단체행동권

(문12)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3.50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우리 국민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에 52.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18.5%, ‘동의하는 편이다’ 33.6%, ‘보통이다’ 32.0%,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1.4%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5%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5명 이상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15.9%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51.2%가 '동의', 17.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52.9%가 '동의'로 14.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78.1%, 20대가 60.8%, 30대가 60.2%, 40대가 54.9%, 50대가 46.5%, 60대 이상 39.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 26.0%, 50대 21.8%, 30대 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52.3%, 전문대 51.9%, 대졸(4년)이상 52.0%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19.1%, 전문대 14.9%, 대졸(4년)이상 14.9%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52.8%와 비정규직의 5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15.7%, 비정규직의 15.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48.8%가 '동의', 18.8%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53.4%가 '동의', 15.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52.1%, 공공기관 및 단체 57.5%, 기타 4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16.0%, 공공기관 및 단체 11.5%, 기타 28.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54.6%, 연구공학기술IT 52.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3.2% 전문직 62.8%, 경영관리직 42.0%, 판매·영업·서비스직 48.6%, 단순노무운송직 53.8%, 전업주부 39.9%, 학생 65.1%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26.0%, 전업주부 22.2%, 판매영업서비스직 21.5%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51.1%, 200~300만원 미만 50.6%, 300만원~400만원 미만 55.2%, 400~500만원 미만 49.7%, 500~600만원 미만 52.8%, 600만원 이상이 52.1%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20.3%, 400~500만원 16.6% 300~400만원 미만 16.3%, 600만원 이상 15.8%,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57.7%, 경기·인천 51.9%, 부산·울산·경남 42.5%, 대전·충청·세종

53.5%, 대구·경북 45.1%, 광주·전라 56.5%, 강원·제주 55.9%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산·울산·경남 22.1%, 대구·경북 19.7%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2)

▶ ‘단체행동권’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3.48)과 여성(평균 3.52)간의 평균의 차이(.04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17), 20대(평균 3.78), 30대(평균 3.69), 40대(평균 3.62), 50대 이상(평균 3.22)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 20대($p < .01$), 30대($p < .01$), 40대($p < .01$)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0대를 기준으로 30대($p < .05$)와 40대($p < .01$)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50대 이상보다 10대, 20대, 30대, 40대가 더 높고 30대 및 40대보다 1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3.5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42),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3.54), 대학원 이상(평균 3.4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3.51)과 비정규직(평균 3.58)간의 평균차이(.07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35)과 미혼(평균 3.72)간의 평균차이(.36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3.48)과 공공부문(평균 3.73)간의 평균차이(.24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3.55), 연구·공학전문직(평균 3.6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3.84),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3.77), 경영관리직(평균 3.16),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3.34), 단순노동직(평균 3.60), 전업주부(평균 3.22) 학생(평균 3.86)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와 학생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학생이 전업주부보다 ‘단체행동권’ 노동인

권의식 더 높음을 의미한다.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35), 15~40시간 미만(평균 3.43), 40~52시간 미만(평균 3.58), 52시간 이상(평균 3.2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3.59)과 비임금(평균 3.15)간의 평균차이(.44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자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42), 200~300만원 미만(평균 3.54), 300~400만원 미만(평균 3.50), 400~500만원 미만(평균 3.50), 500만원 이상(평균 3.5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43)과 일반(평균 3.52)간의 평균차이(.09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13.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문13.1)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쟁의행위 포함), 해당 관청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평균 4.06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13.1)

- ▶ 우리 국민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쟁의행위 포함), 해당 관청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에 78.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33.1%, ‘동의하는 편이다’ 45.3%, ‘보통이다’ 17.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5%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9%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4.4%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3.1)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8.7%가 ‘동의’, 4.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8.1%가 ‘동의’로 4.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5.3%, 20대가 81.9%, 30대가 82.0%, 40대가 80.7%, 50대가 77.7%, 60대 이상 70.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 7.0%, 50대 5.7%, 30대 5.4%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80.1%, 전문대 77.4%, 대졸(4년)이상 78.1%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4.3%, 전문대 3.3%, 대졸(4년)이상 4.7%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7.5%와 비정규직의 77.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4.9%, 비정규직의 6.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8.8%가 ‘동의’, 3.8%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7.3%가 ‘동의’, 4.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8.3%, 공공기관 및 단체 78.2%, 기타 68.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3%, 공공기관 및 단체 3.4%, 기타 13.2%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8.4%, 연구공학기술IT 79.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4.2% 전문직 77.9%,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76.6%, 단순노무운송직 78.8%, 전업주부 73.2%, 학생 87.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10.0%, 전업주부 및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이 각각 5.3%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8.6%, 200~300만원 미만 79.2%, 300만원~400만원 미만 82.9%, 400~500만원 미만 81.2%, 500~600만원 미만 76.0%, 600만원 이상이 79.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7.0%, 500~600만원 4.9%, 600만원 이상 4.8%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7.9%, 경기·인천 81.5%, 부산·울산·경남 68.1%, 대전·충청·세종 81.4%, 대구·경북 75.4%, 광주·전라 79.3%, 강원·제주 76.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구·경북 8.2%, 부산·울산·경남 6.2%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3.1)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08)과 여성(평균 4.05)간의 평균의 차이(.02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85$).
- (연령별) 10대(평균 4.41), 20대(평균 4.18), 30대(평균 4.19), 40대(평균 4.12), 50대 이상(평균 3.92)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01$), 20대($p<.05$), 30대($p<.05$)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50대 보다 10대·20대·3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05),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0),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10), 대학원 이상(평균 3.9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04)과 비정규직(평균 4.09)간의 평균차이(.04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00)과 미혼(평균 4.16)간의 평균차이(.16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즉,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07)과 공공부문(평균 4.19)간의 평균차이(.12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7),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2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32),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6), 경영관리직(평균 3.84),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06), 단순노동직(평균 4.14), 전업주부(평균 3.88) 학생(평균 4.2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미만(평균 3.79), 15~40시간미만(평균 4.06), 40~52시간(평균 4.11), 52시간이상(평균 3.9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12)과 비임금(평균 3.81)간의 평균차이(.31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즉,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자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91), 200~300만원 미만(평균 4.08), 300~400만원 미만(평균 4.09), 400~500만원 미만(평균 4.11), 500만원 이상(평균 4.0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09)과 일반(평균 4.06)간의 평균차이(.02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13.2)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02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13.2)

- ▶ 우리 국민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75.2%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시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32.0%, ‘그렇다’ 43.2%, ‘보통이다’ 20.2%, ‘그렇지 않다’는 4.0%, ‘전혀 그렇지 않다’는 0.6%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3.2)

-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7.5%가 ‘그렇다’, 3.4%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2.9%가 ‘동의’로 5.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82.8%, 20대가 76.0%, 30대가 71.7%, 40대가 81.7%, 50대가 77.7%, 60대 이상의 68.6%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60대 이상 7.7%,

20대 4.1%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74.2%, 전문대 74.6%, 대졸(4년)이상 75.6%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3.9%, 전문대가 6.7% 대졸(4년)이상이 4.4%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6.6%와 비정규직의 79.6%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1%와 비정규직의 6.8%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5.1%가 ‘그렇다’, 6.3%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6.8%가 ‘그렇다’, 3.9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5.3%, 공공기관 및 단체 74.7%, 기타 79.3%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1%, 공공기관 및 단체 3.5%, 기타 7.6%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4.3%, 연구공학기술IT 82.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4.2% 전문직 79.0%,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78.5%, 단순노무운송직 68.8%, 전업주부 68.6%, 학생 75.6%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경영관리직 8.0%, 전업주부 7.9%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4.4%, 200~300만원 75.5%, 300~400만원 74.6%, 400~500만원 75.2%, 500~600만원 81.0%, 600만원 이상의 78.5%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300~400만원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8.9%, 경기·인천 73.8%, 부산·울산·경남 72.6%, 대전·충청·세종 82.3%, 대구·경북 70.5%, 광주·전라 67.4%, 강원·제주 70.6%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광주·전라 9.8%, 강원·제주 5.9%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3.2)

-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시 적극적 행동’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06)과 여성(평균 3.98)간의 평균의 차이(.08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30), 20대(평균 4.06), 30대(평균 3.98), 40대(평균 4.11), 50대 이상(평균 3.9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과 10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

-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50대 이상보다 1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00),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93),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04), 대학원 이상(평균 4.0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03)과 비정규직(평균 4.01)간의 평균차이(.01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97)과 미혼(평균 4.09)간의 평균차이(.11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3.98)과 공공부문(평균 4.13)간의 평균차이(.14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3.97),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1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3), 경영관리직(평균 3.8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08), 단순노동직(평균 3.96), 전업주부(평균 3.86), 학생(평균 4.10)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56), 15~40시간 미만(평균 3.99), 40~52시간 미만(평균 4.07), 52시간 이상(평균 3.91)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15~40시간 미만($p < .05$)과 40~52시간 미만($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 미함과 40~52시간 미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03)과 비임금(평균 3.94)간의 평균차이(.09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90), 200~300만원 미만(평균 4.03), 300~400만원 미만(평균 4.00), 400~500만원 미만(평균 4.02), 500만원 이상(평균 4.0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90)과 일반(평균 4.02)간의 평균차이(.12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14.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문14.1) 사용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평균 4.15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14.1)

- ▶ 우리 국민은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에 80.6%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38.4%, ‘동의하는 편이다’ 42.2%, ‘보통이다’ 16.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3%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9%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3.2%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4.1)

- ▶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에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2.2%가 ‘동의’, 3.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9.0%가 ‘동의’로 2.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2.2%, 20대가 82.5%, 30대가 83.2%, 40대가 85.2%, 50대가 80.1%, 60대 이상 73.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 5.7%, 30대 3.6%, 20대 3.5%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80.1%, 전문대 80.7%, 대졸(4년)이상 80.7%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3.9%, 전문대 2.3%, 대졸(4년)이상 3.2%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0.8%와 비정규직의 79.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1%, 비정규직의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7.6%가 ‘동의’, 3.8%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1.1%가 ‘동의’, 3.6%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0.9%, 공공기관 및 단체 81.6%, 기타 7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3%, 공공기관 및 단체 2.9%, 기타 9.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1.2%, 연구공학기술IT 82.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8.9% 전문직 80.3%,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85.1%, 단순노무운송직 78.8%, 전업주부 78.5%, 학생 85.4%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76.3%, 200~300만원 미만 80.3%, 300만원~400만원 미만 82.9%, 400~500만원 미만 82.3%, 500~600만원 미만 78.1%, 600만원 이상이 81.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7.0%, 600만원 이상 3.9%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7.4%, 경기·인천 84.1%, 부산·울산·경남 77.0%, 대전·충청·세종 83.3%, 대구·경북 77.9%, 광주·전라 78.3%, 강원·제주 76.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광주·전라 4.4%, 부산·울산·경남 3.6%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4.1)

▶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와 관련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17)과 여성(평균 4.12)간의 평균의 차이(.05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48), 20대(평균 4.20), 30대(평균 4.20), 40대(평균 4.27), 50대 이상(평균 4.03)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1$)와 40대 ($p < .05$)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50대 보다 10대와 4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고졸이하(평균 4.16),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13),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18), 대학원 이상(평균 4.05)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평균 4.15)과 비정규직(평균 4.14)간의 평균차이(.0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11)과 미혼(평균 4.20)간의 평균차이(.08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15)과 공공부문(평균 4.25)간의 평균차이(.09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12),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2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47),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20), 경영관리직(평균 3.9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5), 단순노동직(평균 4.19), 전업주부(평균 4.04) 학생(평균 4.2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81), 15~40시간 미만(평균 4.19), 40~52시간 미만(평균 4.22), 52시간 이상(평균 3.91)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40~52시간 미만과 비교하여 15시간 미만($p < .05$), 52시간 이상($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40~52시간 미만이 15시간 미만과 52시간 이상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20)과 비임금(평균 3.95)간의 평균차이(.25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에 대한 노동인권 의식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자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99), 200~300만원 미만(평균 4.15), 300~400만원 미만(평균 4.19), 400~500만원 미만(평균 4.18), 500만원 이상(평균 4.17)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13)과 일반(평균 4.16)간의 평균차이(.03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s).

(문14.2)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01점 ... 5점 기준)

☞ 적극적인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14.2)

- ▶ 우리 국민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75.4%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30.3%, ‘그렇다’ 45.1%, ‘보통이다’ 20.2%, ‘그렇지 않다’는 3.9%, ‘전혀 그렇지 않다’는 0.5%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4.2)

- ▶ ‘사용자의 부당 간섭 및 개입 시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78.1%가 ‘그렇다’, 3.3%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2.7%가 ‘동의’로 5.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78.1%, 20대가 75.4%, 30대가 75.9%, 40대가 80.7%, 50대가 78.2%, 60대 이상의 68.7%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60대 이상 7.0%, 1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73.1%, 전문대 72.9%, 대졸(4년)이상 76.7%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3.9%, 전문대가 6.7% 대졸(4년)이상이 4.1%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9.0%와 비정규직의 77.3%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2.2%와 비정규직의 6.8%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7.5%가 ‘그렇다’, 7.5%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8.4%가 ‘그렇다’, 3.3%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76.4%, 공공기관 및 단체 77.6%, 기타 81.1%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6%, 공공기관 및 단체 2.3%, 기타 9.4%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7.3%, 연구공학기술IT 73.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9.0% 전문직 77.9%, 경영관리직 76.0%, 판매·영업·서비스직 78.5%, 단순노무운송직

75.1%, 전업주부 66.0%, 학생 71.5%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전업주부 7.9%, 학생 5.7%, 판매영업서비스직 5.6%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3.0%, 200~300만원 77.1%, 300~400만원 75.0%, 400~500만원 77.9%, 500~600만원 74.6%, 600만원 이상의 80.3%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00만원 미만 8.4%, 300~400만원 6.1%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76.4%, 경기·인천 75.8%, 부산·울산·경남 74.4%, 대전·충청·세종 79.3%, 대구·경북 73.0%, 광주·전라 69.6%, 강원·제주 67.7%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광주·전라 8.7%, 부산·울산·경남 6.2%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4.2)

▶ ‘사용자 부당간섭 및 개입 시 적극적 행동여부’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07)과 여성(평균 3.94)간의 평균의 차이(.12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사용자 부당간섭 및 개입 시 적극적 행동여부’ 노동인권의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 10대(평균 4.14), 20대(평균 4.05), 30대(평균 4.00), 40대(평균 4.10), 50대 이상(평균 3.9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3.95),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3.91),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05), 대학원 이상(평균 4.05)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07)과 비정규직(평균 3.92)간의 평균차이(.14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3.97)과 미혼(평균 4.06)간의 평균차이(.09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00)과 공공부문(평균 4.12)간의 평균차이(.1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3.96),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1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2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10), 경영관리직(평균 4.02),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02), 단순노동직(평균 4.09), 전업주부(평균 3.79), 학생(평균 3.9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65), 15~40시간 미만(평균 3.96), 40~52시간 미만(평균 4.07), 52시간 이상(평균 4.00)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40~52시간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사용자 부당간섭 및 개입 시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15시간 미만보다 40~52시간 미만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03)과 비임금(평균 3.98)간의 평균차이(.05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3.84), 200~300만원 미만(평균 4.02), 300~400만원 미만(평균 4.00), 400~500만원 미만(평균 3.99), 500만원 이상(평균 4.0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3.85)과 일반(평균 4.04)간의 평균차이(.19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3. 사회·인격적 권리영역

15. 직업선택의 자유

(문15)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46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에 92.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54.1%, ‘동의하는 편이다’ 38.6%, ‘보통이다’ 6.6%,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0.7%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0%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7.3%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92.9%가 ‘동의’, 0.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92.6%가 ‘동의’로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5.4%, 20대가 90.7%, 30대가 87.9%, 40대가 95.5%, 50대가 91.5%, 60대 이상 95.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50대 1.9%, 60대 이상 1.0% 순으로 응답하였다.
 - (학력별)고졸이하 94.2%, 전문대 91.1%, 대졸(4년)이상 92.6%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0.4%, 전문대 0.6%, 대졸(4년)이상 0.9%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91.8%와 비정규직의 92.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0.4%, 비정규직의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90.1%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

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92.0%가 '동의', 0.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92.4%, 공공기관 및 단체 89.1%, 기타 94.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0.6%, 공공기관 및 단체 0.6%, 기타 1.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 사무행정직 90.4%, 연구공학기술IT 9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7% 전문직 96.5%, 경영관리직 92.0%, 판매·영업·서비스직 90.6%, 단순노무운송직 88.8%, 전업주부 94.1%, 학생 91.9%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3%, 경영관리직 및 전업주부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8.8%, 200~300만원 미만 91.1%, 300만원~400만원 미만 94.7%, 400~500만원 미만 92.3%, 500~600만원 미만 95.0%, 600만원 이상 93.4%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1.4%, 400~500만원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93.8%, 경기·인천 91.7%, 부산·울산·경남 92.9%, 대전·충청·세종 93.9%, 대구·경북 93.4%, 광주·전라 91.3%, 강원·제주 91.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구·경북 1.6%, 광주·전라 1.1%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5)

▶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51)과 여성(평균 4.41)간의 평균의 차이(.10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즉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연령별) 10대(평균 4.64), 20대(평균 4.53), 30대(평균 4.40), 40대(평균 4.53), 50대 이상(평균 4.41)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44),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36),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49), 대학원 이상(평균 4.5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46)과 비정규직(평균 4.45)간의 평균차이(.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44)과 미혼(평균 4.49)간의 평균차이(.04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46)과 공공부문(평균 4.45)간의 평균차이(.0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41),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6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68),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53), 경영관리직(평균 4.38),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47), 단순노동직(평균 4.40), 전업주부(평균 4.33) 학생(평균 4.5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95), 15~40시간 미만(평균 4.52), 40~52시간 미만(평균 4.48), 52시간 이상(평균 4.41)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15시간 미만과 비교하여 15~40시간 미만($p < .01$), 40~52시간 미만($p < .01$), 52시간 이상($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 미만과 40~52시간 미만, 52시간 이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47)과 비임금(평균 4.37)간의 평균차이(.1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39), 200~300만원 미만(평균 4.44), 300~400만원 미만(평균 4.51), 400~500만원 미만(평균 4.37), 500만원 이상(평균 4.5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43)과 일반(평균 4.45)간의 평균차이(.02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16.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문16)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균 4.34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에 89.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7.5%, ‘동의하는 편이다’ 41.8%, ‘보통이다’ 8.5%,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0%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2%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2.2%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국가의 노력(고용증진,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9.5%가 ‘동의’, 2.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9.2%가 ‘동의’로 1.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3.7%, 20대가 86.5%, 30대가 85.5%, 40대가 94.5%, 50대가 88.6%, 60대 이상 89.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 4.1%, 30대 3.0%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9.4%, 전문대 85.7%, 대졸(4년)이상 90.3%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2.0%, 전문대 및 대졸(4년)이상이 각각 2.2%로 파악되었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9.0%와 비정규직의 9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1.8%, 비정규직의 3.4%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7.5%가 ‘동의’, 5.1%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8.9%가 ‘동의’, 2.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9.4%, 공공기관 및 단체 86.8%, 기타 88.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2.4%, 공공기관 및 단체 3.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9.2%, 연구공학기술IT 97.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4.3% 전문직 88.4%, 경영관리직 84.0%, 판매·영업·서비스직 89.7%, 단순노무운송직 88.8%, 전업주부 88.2%, 학생 88.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단순노무운전직 5.0%, 경영관리직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6.0%, 200~300만원 미만 87.0%, 300만원~400만원 미만 91.3%, 400~500만원 미만 90.6%, 500~600만원 미만 90.9%, 600만원 이상이 89.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3.5%, 600만원 이상이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8.0%, 경기·인천 90.8%, 부산·울산·경남 84.9%, 대전·충청·세종 92.4%, 대구·경북 88.5%, 광주·전라 87.0%, 강원·제주 88.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원·제주 5.9%, 부산·울산·경남 3.6%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6)

▶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33)과 여성(평균 4.36)간의 평균의 차이(.02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45), 20대(평균 4.35), 30대(평균 4.31), 40대(평균 4.50), 50대 이상(평균 4.28)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과 40대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은 50대 이상보다 40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 (학력간)고졸이하(평균 4.35),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24),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38), 대학원 이상(평균 4.3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평균 4.36)과 비정규직(평균 4.40)간의 평균차이(.03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기혼(평균 4.33)과 미혼(평균 4.37)간의 평균차이(.04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민간부문(평균 4.36)과 공공부문(평균 4.31)간의 평균차이(.05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사무·행정직(평균 4.33),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5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47),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40), 경영관리직(평균 4.2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43), 단순노동직(평균 4.31), 전업주부(평균 4.22) 학생(평균 4.3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86), 15~40시간 미만(평균 4.42), 40~52시간 미만(평균 4.41), 52시간 이상(평균 4.16)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비교하여 15~40시간 미만($p < .01$), 40~52시간 미만($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38)과 비임금(평균 4.21)간의 평균차이(.17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자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33), 200~300만원 미만(평균 4.34), 300~400만원 미만(평균 4.37), 400~500만원 미만(평균 4.31), 500만원 이상(평균 4.35)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6)과 일반(평균 4.36)간의 평균차이(.09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17. 교육권

(문17)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33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89.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4.8%, ‘동의하는 편이다’ 44.8%, ‘보통이다’ 10.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0.9%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0%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약 9명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0.9%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노동자 교육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8.4%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9.7%가 ‘동의’로 0.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5.3%, 20대가 85.9%, 30대가 89.2%, 40대가 92.1%, 50대가 86.7%, 60대 이상 89.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0대 1.8%, 50대 1.4%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90.6%, 전문대 85.1%, 대졸(4년)이상 89.5%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0.4%, 전문대 1.7%, 대졸(4년)이상 0.9%로 파악되었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9.6%와 비정규직의 8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1.1%, 비정규직의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90.0%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9.4%가 ‘동의’,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9.8%, 공공기관 및 단체 87.9%, 기타 92.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0.6%, 공공기관 및 단체 2.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8.8%, 연구공학기술IT 9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9.5% 전문직 93.0%, 경영관리직 82.0%, 판매·영업·서비스직 89.7%, 단순노무운송직 91.3%, 전업주부 87.6%, 학생 86.2%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4.0%, 사무행정직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7.5%, 200~300만원 미만 89.6%, 300만원~400만원 미만 88.1%, 400~500만원 미만 92.3%, 500~600만원 미만 87.4%, 600만원 이상이 89.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2.1%, 500~600만원 1.4%, 600만원 이상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7.5%, 경기·인천 90.2%, 부산·울산·경남 86.7%, 대전·충청·세종 91.4%, 대구·경북 86.9%, 광주·전라 90.2%, 강원·제주 85.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울 1.4%, 광주·전라 1.1%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7)

▶ ‘교육권’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34)과 여성(평균 4.32)간의 평균의 차이(.01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56), 20대(평균 4.37), 30대(평균 4.35), 40대(평균 4.43), 50대 이상(평균 4.2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5$)와 40대($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와 40대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34),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28),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33), 대학원사 이상(평균 4.3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34)과 비정규직(평균 4.36)간의 평균차이(.0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9)과 미혼(평균 4.38)간의 평균차이(.08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교육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기혼에 비해 미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35)과 공공부문(평균 4.35)간의 평균차이(.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29),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47),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53),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47), 경영관리직(평균 4.14),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38), 단순노동직(평균 4.40), 전업주부(평균 4.16) 학생(평균 4.3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98), 15~40시간 미만(평균 4.32), 40~52시간 미만(평균 4.40), 52시간 이상(평균 4.20)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40~52시간 미만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1$). 즉 ‘교육권’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15시간미만보다 40~52시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37)과 비임금(평균 4.25)간의 평균차이(.12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31), 200~300만원 미만(평균 4.39), 300~400만원

미만(평균 4.32), 400~500만원 미만(평균 4.34), 500만원 이상(평균 4.3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31)과 일반(평균 4.34)간의 평균차이(.03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18.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

(문18)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평균 4.15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81.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38.1%, ‘동의하는 편이다’ 43.6%, ‘보통이다’ 14.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4%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기본생활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3.5%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 ‘실업 시 사회보장 청구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2.0%가 ‘동의’, 3.5%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1.3%가 ‘동의’로 3.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85.9%, 20대가 79.0%, 30대가 83.2%, 40대가 89.1%, 50대가 79.6%, 60대 이상 78.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50대 5.2%, 60대 이상 5.0%, 20대 4.1%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1.2%, 전문대 77.9%, 대졸(4년)이상 82.9%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2.8%, 전문대 3.4%, 대졸(4년)이상 3.8%로 파악되었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2.8%와 비정규직의 78.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7%, 비정규직의 4.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1.3%가 ‘동의’, 2.5%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2.2%가 ‘동의’, 3.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83.3%, 공공기관 및 단체 79.3%, 기타 81.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4.7%, 공공기관 및 단체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1.5%, 연구공학기술IT 91.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4.7% 전문직 87.2%, 경영관리직 78.0%, 판매·영업·서비스직 76.6%, 단순노무운송직 85.0%, 전업주부 79.7%, 학생 80.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10.0%, 판매영업서비스직 4.7%, 전업주부와 사무행정직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0.5%, 200~300만원 미만 83.4%, 300만원~400만원 미만 82.5%, 400~500만원 미만 84.0%, 500~600만원 미만 81.7%, 600만원 이상이 78.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0만원 이상과 300~400만원이 각각 4.4%, 200만원 미만과 500~600만원이 각각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1.3%, 경기·인천 82.5%, 부산·울산·경남 78.8%, 대전·충청·세종 85.4%, 대구·경북 83.6%, 광주·전라 76.1%, 강원·제주 73.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원·제주 8.8%, 부산·울산·경남 6.2%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8)

- ▶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과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17)과 여성(평균 4.13)간의 평균의 차이(.04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39), 20대(평균 4.16), 30대(평균 4.23), 40대(평균 4.29), 50대 이상(평균 4.04)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10대($p < .05$)와 40대($p < .05$)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실업 시의 사회**

보장 청구권'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와 40대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21),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10),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15), 대학원 이상(평균 4.1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16)과 비정규직(평균 4.14)간의 평균차이(.02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12)과 미혼(평균 4.20)간의 평균차이(.08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16)과 공공부문(평균 4.15)간의 평균차이(.0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09),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4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47),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3), 경영관리직(평균 3.9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16), 단순노동직(평균 4.28), 전업주부(평균 3.99) 학생(평균 4.21)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81), 15~40시간 미만(평균 4.15), 40~52시간 미만(평균 4.22), 52시간 이상(평균 4.01)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40~52시간미만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p < .05$). 즉,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15시간미만보다 40~52시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22)과 비임금(평균 3.93)간의 평균차이(.28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즉,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자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18), 200~300만원 미만(평균 4.20), 300~400만원 미만(평균 4.16), 400~500만원 미만(평균 4.20), 500만원 이상(평균 4.0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24)과 일반(평균 4.16)간의 평균차이(.08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19. 인간존엄의 권리

(문19.1) 모든 사람은 노동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평균 4.41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문19.1)

- ▶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은 노동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에 90.6%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51.6%, ‘동의하는 편이다’ 39.0%, ‘보통이다’ 8.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0.8%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4%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모든 사람은 노동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1.2%가 응답하였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19.1)

- ▶ ‘인간존엄의 권리’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90.2%가 ‘동의’, 1.0%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91.1%가 ‘동의’로 1.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10대가 96.9%, 20대가 85.4%, 30대가 89.2%, 40대가 84.6%, 50대가 91.5%, 60대 이상 90.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대 1.8%, 60대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91.4%, 전문대 87.3%, 대졸(4년)이상 91.3%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0.8%, 전문대 0.6%, 대졸(4년)이상 1.5%로 파악되었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90.1%와 비정규직의 9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1.4%, 비정규직의 1.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91.3%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90.3%가 ‘동의’, 1.3%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 민간회사 91.1%, 공공기관 및 단체 89.9%, 기타 92.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1.5%, 공공기관 및 단체 0.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88.8%, 연구공학기술IT 97.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9.5% 전문직 94.2%, 경영관리직 84.0%, 판매·영업·서비스직 93.4%, 단순노무운송직 88.8%, 전업주부 88.9%, 학생 90.3%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6.0%, 판매영업서비스직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86.0%, 200~300만원 미만 89.1%, 300만원~400만원 미만 94.3%, 400~500만원 미만 93.4%, 500~600만원 미만 89.4%, 600만원 이상이 89.9%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0만원 미만 2.8%, 200~300만원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8.5%, 경기·인천 91.7%, 부산·울산·경남 89.4%, 대전·충청·세종 92.9%, 대구·경북 89.3%, 광주·전라 90.2%, 강원·제주 91.1%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각각 1.5%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9.1)

▶ '인간존엄의 권리'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40)과 여성(평균 4.42)간의 평균의 차이(.02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52), 20대(평균 4.36), 30대(평균 4.37), 40대(평균 4.54), 50대 이상(평균 4.37)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학력간)고졸이하(평균 4.44),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36),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40), 대학원 이상(평균 4.4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평균 4.40)과 비정규직(평균 4.39)간의 평균차이(.01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기혼(평균 4.42)과 미혼(평균 4.39)간의 평균차이(.03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40)과 공공부문(평균 4.43)간의 평균차이(.02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33),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5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63),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51), 경영관리직(평균 4.24),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51), 단순노동직(평균 4.35), 전업주부(평균 4.29) 학생(평균 4.43)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4.00), 15~40시간 미만(평균 4.41), 40~52시간 미만(평균 4.45), 52시간 이상(평균 4.29)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과 비교하여 15~40시간 미만($p < .05$), 40~52시간 미만($p < .01$)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인간존엄의 권리’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15시간 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42)과 비임금(평균 4.37)간의 평균차이(.05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34), 200~300만원 미만(평균 4.35), 300~400만원 미만(평균 4.46), 400~500만원 미만(평균 4.50), 500만원 이상(평균 4.3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40)과 일반(평균 4.40)간의 평균차이(.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문19.2)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시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평균 4.24점 ... 5점 기준)

☞적극적 행동 예시

- 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항의 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③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 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⑥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 ⑦ 법률전문가의 자문 요청 ⑧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 ⑨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1 전체 결과 (문19.2)

▶ 우리 국민은 ‘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시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에 82.0%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일터에서 인간존엄이 무시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46.2%, '그렇다' 35.8%, '보통이다' 14.5%, '그렇지 않다'는 3.0%, '전혀 그렇지 않다'는 0.5%로 나타났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문19.2)

- ▶ **‘일터에서 인간존엄이 무시될 경우 적극적 행동 여부’에 관한 응답자별 특성 분석 결과,**
 - (성별)남자는 82.1%가 ‘그렇다’, 3.9%가 ‘그렇지 않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82.1%가 ‘동의’로 2.9%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그렇다’로는 10대가 82.9%, 20대가 77.7%, 30대가 80.1%, 40대가 87.1%, 50대가 82.4%, 60대 이상의 81.7%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20대 4.7%, 60대 이상 4.4%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84.0%, 전문대 78.5%, 대졸(4년)이상 82.3%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고졸이하가 2.3%, 전문대가 7.2% 대졸(4년)이상이 2.8%로 나타났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83.0%와 비정규직의 83.0%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3.1%와 비정규직의 1.1%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 (특수고용직)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7.6%가 ‘그렇다’, 7.6%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82.7%가 ‘그렇다’, 3.3%가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민간회사 81.1%, 공공기관 및 단체 82.7%, 기타 88.7%가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3.6%, 공공기관 및 단체 4.6%, 기타 1.9%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8.8%, 연구공학기술IT 91.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9.5% 전문직 89.6%, 경영관리직 80.0%, 판매·영업·서비스직 79.4%, 단순노무운송직 77.5%, 전업주부 77.8%, 학생 78.9%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에서는 경영관리직 8.0%, 단순노무운송직 6.3%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200만원 미만 77.0%, 200~300만원 78.1%, 300~400만원 84.2%, 400~500만원 85.0%, 500~600만원 83.1%, 600만원 이상의 83.3%가 ‘그렇다’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200만원 미만 5.6%, 600만원 이상 4.4%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서울 81.2%, 경기·인천 83.3%, 부산·울산·경남 82.3%, 대전·충청·세종 82.8%, 대구·경북 80.4%, 광주·전라 78.2%, 강원·제주가 85.3%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광주·전라 4.3%, 경기·인천 3.8%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19.2)

▶ ‘인간존엄이 무시될 경우 적극적 행동’에 관한 응답자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결과,

- (성별) 남성(평균 4.24)과 여성(평균 4.25)간의 평균의 차이(.00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 10대(평균 4.36), 20대(평균 4.20), 30대(평균 4.23), 40대(평균 4.32), 50대 이상(평균 4.22)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학력간) 고졸이하(평균 4.16),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17),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28), 대학원 이상(평균 4.38)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평균 4.26)과 비정규직(평균 4.31)간의 평균차이(.04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 기혼(평균 4.22)과 미혼(평균 4.28)간의 평균차이(.06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민간/공공부문) 민간부문(평균 4.21)과 공공부문(평균 4.22)간의 평균차이(.01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직업별) 사무·행정직(평균 4.15),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4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53),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7), 경영관리직(평균 4.20),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27), 단순노동직(평균 4.09), 전업주부(평균 4.14), 학생(평균 4.2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평균 3.79), 15~40시간 미만(평균 4.37), 40~52시간 미만(평균 4.27), 52시간 이상(평균 4.06)간의 평균차이 비교결과, 1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15~40시간 미만($p < .01$)과 40~52시간 미만($p < .01$)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즉 ‘인간존엄이 무시될 경우 적극적 행동여부’에 대한 노동인권의식은 15시간미만보다 15~40시간과 40~52시간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24)과 비임금(평균 4.23)간의 평균차이(.012)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평균 4.15), 200~300만원 미만(평균 4.15), 300~400만원 미만(평균 4.30), 400~500만원 미만(평균 4.25), 500만원 이상(평균 4.29)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 특수고용직(평균 4.10)과 일반(평균 4.25)간의 평균차이(.15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20. 공정분배의 권리

(문2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한다.

(평균 4.07점 ... 5점 기준)

1 전체 결과

▶ 우리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한다’에 76.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우 동의한다’ 40.6%, ‘동의하는 편이다’ 35.6%, ‘보통이다’ 15.9%,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9%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로 응답하였다.

- 즉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및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분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체 7.9%가 응답하였다.

2 응답자 특성별 결과

▶ ‘공정분배의 권리’와 관련하여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 (성별) 남자는 74.6%가 ‘동의’, 9.1%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77.8%가 ‘동의’로 6.8%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 10대가 92.2%, 20대가 77.2%, 30대가 76.5%, 40대가 80.2%, 50대가 75.9%, 60대 이상 69.7%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대 이상 12.3%, 30

대 9.0%, 50대 7.1%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고졸이하 72.3%, 전문대 71.8%, 대졸(4년)이상 78.9%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고졸이하 10.2%, 전문대 8.9%, 대졸(4년)이상 6.8%로 파악되었다.
- (근로형태별)**정규직의 75.1%와 비정규직의 73.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8.6%, 비정규직의 11.3%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특수고용직)**특수고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7.6%가 ‘동의’, 6.3%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응답자 중에서는 75.1%가 ‘동의’, 8.7%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장유형별)**민간회사 76.0%, 공공기관 및 단체 75.3%, 기타 69.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회사 9.3%, 공공기관 및 단체 4.6%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
- (직업별)**사무행정직 76.2%, 연구공학기술IT 79.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8.4% 전문직 83.7%, 경영관리직 58.0%, 판매·영업·서비스직 75.7%, 단순노무운송직 75.1%, 전업주부 75.2%, 학생 83.0%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는 경영관리직 18.0%, 단순노무운송직 13.8%, 연구공학기술IT직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별)**200만원 미만 73.5%, 200~300만원 미만 80.2%, 300만원~400만원 미만 77.7%, 400~500만원 미만 77.9%, 500~600만원 미만 76.7%, 600만원 이상이 71.5%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00만원 이상 9.6%, 200~300만원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서울 75.0%, 경기·인천 75.2%, 부산·울산·경남 73.4%, 대전·충청·세종 80.3%, 대구·경북 77.1%, 광주·전라 78.3%, 강원·제주 70.6%가 ‘동의’로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산·울산·경남 9.8%, 대구·경북 9.1% 순으로 나타났다.

3 응답자 특성별 _ 평균차이 (문20)

▶ ‘공정분배의 권리’에 관한 응답자별 평균차이 유의성 검증결과,

- (성별)**남성(평균 4.02)과 여성(평균 4.12)간의 평균차이(.1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n.s).
- (연령별)**10대(평균 4.47), 20대(평균 4.15), 30대(평균 4.06), 40대(평균 4.19), 50대

- 이상(평균 3.95)간의 평균차이 비교 결과, 50대 이상과 10대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p < .01$)을 확인하였다. 즉, '공정분배의 권리'에 대한 노동인권意識은 50대 이상과 비교해서 10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간)고졸이하(평균 4.12), 전문대 재학/졸업(평균 4.04), 4년제 대학 재학/졸업(평균 4.08), 대학원 이상(평균 3.96)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평균 4.04)과 비정규직(평균 3.99)간의 평균차이(.05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기혼/미혼)기혼(평균 4.01)과 미혼(평균 4.15)간의 평균차이(.13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즉 '공정분배의 권리'에 관한 노동인권意識은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민간/공공부문)민간부문(평균 4.05)과 공공부문(평균 4.12)간의 평균차이(.07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직업별)사무·행정직(평균 4.03), 연구·공학전문직(평균 4.1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직(평균 4.16), 교사·법조인·의사·회계사 등 전문직(평균 4.31), 경영관리직(평균 3.52), 판매·영업·서비스직(평균 4.12), 단순노동직(평균 4.03), 전업주부(평균 3.98) 학생(평균 4.24)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영관리직을 기준으로 전문직($p < .05$)과 학생($p < .05$)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영관리 직보다 전문직과 학생의 '공정분배 권리' 노동인권意識이 더 높다는 것이다.**
 - (근로시간별)15시간 미만(평균 3.74), 15~40시간 미만(평균 4.03), 40~52시간(평균 4.12), 52시간 이상(평균 3.84)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비임금) 임금(평균 4.08)과 비임금(평균 3.93)간의 평균차이(.15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 (월평균소득)200만원 미만(평균 4.08), 200~300만원 미만(평균 4.09), 300~400만원 미만(평균 4.13), 400~500만원 미만(평균 4.05), 500만원 이상(평균 4.02)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 (특수고용 여부)특수고용직(평균 4.16)과 일반(평균 4.04)간의 평균차이(.12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s).

2020년 국민 노동인권익식조사

CHAPTER 4

결과 및 제언

1.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인식을 조사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동인권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사결과 개별법적 권리영역(평균 4.21점)과 사회·인격적 권리영역(평균 4.29)에 비해 집단법적 권리영역(평균 3.94)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리에 대한 인식과 공감에 비해 행동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법적 권리 영역에서는 50대 이상, 기혼,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장시간근로자(52시간 이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전문대 재학/졸업자, 주부 등의 상대적 노동인권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 대비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와 장시간 근로자(주당근로시간 평균이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인권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의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 오히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로 살펴 볼 때 균등한 처우, 청소년노동자/여성노동자 보호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인권인식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낮으며, 여성과 청소년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인권인식은 남성과 전문대 재학/졸업자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은 '안전과 보건'의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나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법적 권리 영역에서는 50대 이상, 자영업자, 기혼,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민간부문은 '집단법적 권리영역'의 상대적 노동인권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행동권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인권인식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모든 항목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문과 전업주부는 단체행동권이, 여성은 사용자 지배·개입 금지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 노동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격적 권리 영역에서는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50대 이상의 상대적 인권인식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분배의 권리, 실업 시의 사회보장 청구권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인권의식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자영업자는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이, 경영관리직은 공정분배의 권리의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나 사용자에 대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교육 등 각종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를 보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민과 실행이 필요하다.

첫째, 단시간 및 장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50대, 특수고용직, 전문대 등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실시로 전반적 수준을 상향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에 기반한 고용과 노동정책 수립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가 중요하다.

둘째, 50대 이상, 기혼, 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 장시간근로자(52시간 이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전문대 재학/졸업자 등 노동인권교육 사각지대 계층이 노동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심의 노동교육 거점센터를 신설(또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청소년·주부·아동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교육시설 건립 등)하여 평생교육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반영 등 기본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청소년 뿐 만아니라 대학생들 특히 전문대 재학/졸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영업 중에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시작 전에 교육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합교육이외에 오프라인 교육컨텐츠 제공 등 노동인권의식 향상 교육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셋째,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 측정도구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국민들이(전 국민 대상 실태조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동용어로 측정도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분석 결과, 3개 요인(1요인 : 개인법적 및 사회인격적 권리영역, 2요인 : 집단법적 영역, 3요인 : 행동영역)으로 구성되므로, 개별법적 및 사회인격적 권리영역에 대한 측정도구 보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인권의식 실태’를 넘어, 노동과 삶의 영역으로의 연구변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인권의식이 생활만족 등 웰빙이나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효과 등 국민들의 노동인권의식이 고용 및 노동환경, 삶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인권인식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이므로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000명 내외에서 향후 3,000명 내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사 계층(예: 외국인 노동자) 및 응답자(예: 특수고용직, 학생, 주부 등), 경영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상 확대(현재 ‘경영관리직’으로 조사)

여섯째, ‘노동인권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의 학회지 등재,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내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전문성 강화 및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